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2005. 12

노 영 훈

kipf 한국조세연구원

(빈페이지)

서 언

과생금융상품에 대한 조세문제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실무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을 끌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과생금융상품이 제기하는 조세문제가 상품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현행의 조세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때문이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실망감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소득세제에 수많은 차등과세규정 및 현금결제주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조세회피전략을 구사하는 차원에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늘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용 상품개발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005년 불거진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에 과생금융상품이 개인소득세제에 위협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기존의 영미계 문헌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소득세 조세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선임연구위원인 노영훈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2000~2001년 안식년 기간중 참가하였던 미국 국세청 워크숍과 집필 과정에 참여한 OECD 과생금융상품 관련 워크숍 등에서의 많은 자료 수집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4~5년간 묵혀둔 고민의 내용들을 조세정책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리하여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자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자료정리와 원고수정에 도움을 준 김용대 주임연구원과 장정순 연구조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 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문제는 그 시장이 발달한 미국·영국 그리고 OECD에서도 ‘과세나 규제당국 내에 시장동향을 관찰 (monitoring)하면서 개별상품의 신개발 및 거래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장전문가들에 의해 세제 및 세정의 빈구멍(loophole)을 메우는’ 사후교정적이면서도 점진적(piecemeal) 방식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나라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이면서도 통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조세회피적 거래사례들로 포착되는 시간과 그로부터 세제·세정당국이 납세자에게 비공식적인 안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시간을 줄여 세수일실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을 높이는 등 세정적 노력에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법들로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관련) 종합소득세법·법인세·국제조세 및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은커녕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채권·외환상품·지수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적 난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상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기초 현물상품에 대한 실현주의 과세 및 분류과세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준과세제도(baseline taxation)를 정비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완전한 해결방법인 전면적인 시가평가주의 실시가 불가능한 데 대한 차선택으로서 점진적(piecemeal) 접근방법을 채택할 경우 조세회피를 완화할 수 있는 대

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엔화스왑예금사례로부터의 교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적 거래 및 남용사례(Abusive Tax Shelters and Transactions)를 고시하여 세무행정적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해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를 미국연방소득세와 비교할 때 포괄적 소득세제로의 근접정도가 낮은 일종의 혼합형 소득세제(hybrid income taxation system)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세회피적 특별규정들의 신설·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적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이전 시점에 과세당국이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선물을 포함하거나 선물거래세를 도입하지는 정책적 주장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이는 선물거래로부터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현물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비대칭적 과세에 기인한 시장의 차익거래 장애와 위축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익거래 파생금융상품 중 일부분인 주가지수선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급성장을 하였지만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주식관련 선물에 대해서만 거래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목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인 주식 및 증권에 대해 이미 증권거래세가 존재하고 있고, 도입의 주된 목적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분석적 소득세 과세방법(transactional approach)을 택하기 전의 준비작업으로서, 매우 낮은 거래세율 부과를 통해 거래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듯이 금융자산의 포지션(position)에 대한 변동과 거래의 목적분석 등이

필수적이므로,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관련 정보가 비교적 낮은 납세협력비용으로 과세당국에 축적되어 향후 개인소득세제 보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선물거래소시장과의 경쟁 및 시장활성화에 대하여 반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거래세 세율의 수준과 시장대체성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세금이 아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일종의 거래비용에 해당하면서 세수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거래세 도입에 따른 투자자 행태변화 그리고 외국으로의 거래이전 가능성이다.

(빈페이지)

목 차

I. 서론	11
II. 파생금융상품의 현황과 경제적 본질	15
1. 파생금융상품 시장현황과 상품개발원인	15
2.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원인	18
3. 파생금융상품개발과 소득과세의 한계	19
III. 우리나라의 최근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사례	40
1. 금융기관의 판매실태	40
2. 선물환의 본질과 과세결정	41
3. 소득의 성격 및 개인신고 등 쟁점사항	42
4. 미국의 외화표시 금융상품 과세현황	44
5.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시사점	46
IV.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조세정책적 대응	49
1.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미국의 세제대응	49
2. OECD와 주요 외국의 과세방법론들	59
3.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세제현황과 정책방향	77
V. 요약 및 결론	84
<참고문헌>	91

<부록 1>	94
<부록 2>	97
<부록 3>	107

표 목 차

<표 1> 거래소별 주가지수선물시장 비교	16
<표 2> 거래소별 주가지수옵션시장 비교	17
<표 3>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50
<표 4> 이자율 스왑	63
<표 5> 금융선물	65
<표 6> 주식구입 옵션	68
<표 7> 발행할인채	71
<부표 1> 거래소별 단기이자율선물시장 비교	94
<부표 2> 거래소별 장기이자율선물시장 비교	95
<부표 3> 거래소별 통화선물시장 비교	96

I. 서론

파생금융상품이란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라는 원어의 번역으로 간단히 Derivatives라고 부른다. 원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통화·채권·주식·상품 등 기존의 자산가치 또는 지수를 기초로 하여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이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환율·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데에서 오는 위험(risk)을 회피(hedge)하기 위해서 처음 고안된 것으로 그 가격이 기초금융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계약이다. 이러한 유형의 금융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약 30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급속히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① 위험관리, ② 투기 및 재정차익거래, ③ 자금조달 등 재무관리, ④ 규제 및 조세회피라는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이다. 특히 증거금이나 마진을 통한 레버리지효과까지 가미될 경우 수익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BIS)은 1988년 은행감독자회의를 통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적정 자기자본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¹⁾ 1994년 미국의 Orange County 사건과 Proctor

1)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외 거래항목에 대해서도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신용리스크 상당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에 장부상(on balance sheet)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산입토록 요구함. 1994년에는 파생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감독·지도를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지침을 발표하여, 리스크 최고한도 설정, 시가평가에 의해 매일매일 리스크 점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적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도록 함.

& Gamble 사건, 1995년의 영국 베어링사 도산과 같은 국제적 대형 금융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펀드 사건도 파생금융상품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함께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들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외부통제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을 집계·발표하고 있는데, 은행·증권사·보험사·투자신탁·카드사·선물사·중금사 등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기초자산인 주식·이자율·통화 등별로 보고된 거래내역을 발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동향을 감시(monitoring)하는 주요 목적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거래 잔액비율, 총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거래 이익의 비중, 거래빈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 자본시장의 통합과 국가별 금융시장 개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개발을 통한 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외 헤지펀드들의 우리나라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회피용 투자와 국내의 개인 및 증권사들의 투기적 거래규모가 점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배경에는 '위험관리'라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동일한 경제적 실체거래에 대해 일관성 없는 과세처리를 규정한 세법상 허점(loop-hole)을 남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정책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장내·외 거래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금융전문가 들조차도 난해해하고 이에 대한 세제적 대응 또한 매우 불분명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실효성 있게 봉쇄하기에 오랜 입법기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별로 20년 이상의 전문기를 국세청 내에 확보한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서조차도 상품과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세제와의 조화를 피하면서 세법 및 규칙·예규를 마련하고 판례가 성립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

는 실정이다.

과거 파생금융상품이나 국가 간 금융거래의 현황을 소개하고 거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관점에서 관리감독당국의 회계 및 공시제도상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결과물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세제개선 및 세원관리 등 조세정책 문제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규정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조세회피용 목적으로 분해되거나 재결합되어 위장된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체를 회계학적 그리고 세법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창희(1996)를 시초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과세정책방향을 시사하는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시장활동이 활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된 조세제도 및 세정상의 맹점(loophole)들과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제대응책들 중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홍범교(1997) 및 최홍식·김성룡(1996)은 국내외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시장 현황과 파생금융상품의 국제결제은행(BIS) 및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사용하여 소개하고 그 금융시스템적 순기능을 기초개념에 따라 설명한 후 회계제도·공시제도 등의 개선과 관리감독기구의 역할 등 우리나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정영민(2004)은 미국에서의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연방소득세법상의 과세대응과정 사례들을 미국 연방소득세·법인세 그리고 국제조세 관련규정에 대한 실무차원의 정확한 이해하에 해설하고 있다. 그 외에 박창균(2002)의 연구는 재무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 중 선물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KOSPI200 지수선물계약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선물의 이론 및 실제가격 간 차이를 이용한 선물시장의 효율성이나 선물과 현물 가격 간 정보반영 시차를 이용한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유형의 국내자료를 이용한 국내연구는 재무관리 및 금융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선물시장 개설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2004년 말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과세방침은 추후로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최근 주가지수(KOSPI200) 선물 및 옵션시장은 시장개설 이후 단기간 내에 그 규모가 세계적 수준으로 급팽창하였고, 지난 2004년 하반기에는 감독당국의 조사기간 동안 거래량이 급락하는 등 외부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종사하는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세문제 제기에 대해 민감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투자은행·국제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개발을 통해 조세회피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과세당국의 입장에서의 세제 및 세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원천(source) 및 성격(character)의 소득에 대한 소득과세 합리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해당상품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수단의 하나로 접근할 수도 있다. 파생금융상품 소득은 전통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법상 개념을 구성요소로 충족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를 위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으면서 해당 시장의 특성상 국제적인 조세조화(international tax harmonization)라는 제약적 환경하에서 조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II. 파생금융상품의 현황과 경제적 본질

1. 파생금융상품 시장현황과 상품개발원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현황 및 시장규모를 장외 및 장내(OTC)시장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보아 장외파생상품 잔고 및 거래액은 증가하는 반면 장내거래시장의 상대적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²⁾ 2004년 말 명목금액(Notional amount)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248조달러에 달하며, 총 시가기준(Gross Market Value)으로는 무려 43%가 증가한 9조달러에 달한다. 반면 장내거래규모는 연말 미결제잔액 기준으로 46조달러에 불과해 장외거래규모가 장내에 비해 약 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중을 보면 영국·미국·프랑스가 높은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한국은 세계규모에 비해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시장에서는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신용디폴트 스왑과 같은 스왑형 상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장내거래시장을 보면, KOSPI200 선물시장은 전 세계 주가지수 선물시장 중 거래량 기준 세계4위('05년 상반기 기준)이고 아시아지역 주가지수 선물시장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KOSPI200 옵션시장은 1997년 7월 7일 개설 이후 비약적인 상승세를 거듭하여 거래량 기준 부동의 세계1위 시장규모를 고수하고 있다(<표 1> 및 <표 2> 참조). 기초자산별로 보면 여전히 이자율파생상품이 장외거래상품의 주류를 차지하고, 장외주식파생상품 중에서는 옵션거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한국증권연구원 심포지엄 원고 중 Subrahmanyam(2005) 참조.

<표 1> 거래소별 주가지수선물시장 비교

	거래량(계약수)		거래금액(백만달러)		거래량 순위 (2004기준)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AMERICAS					
BM&F	9,962,204	7,789,427	NA	NA	13
Bourse de Montreal	1,910,248	1,690,900	140,565	97,479	20
Chicago Board of Trade (CBOT)	23,276,014	15,282,007	1,372,383	925,808	6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CBOE)	620	-	18	-	32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306,058,836	281,035,970	18,017,473	15,292,492	1
MexDer	348,835	220,738	3,322	1,503	27
New York Board of Trade (NYBOT)	1,000,963	743,303	581,560	367,192	22
EUROPE, AFRICA, MIDDLE EAST					
Athens Derivatives Exchange	2,922,919	2,886,150	24,388	15,557	19
BME Spanish Exchanges	5,537,365	4,616,795	454,278	279,978	15
Borsa Italiana	4,816,955	6,834,482	633,317	671,427	16
Budapest SE	361,412	364,439	2,186	1,423	26
Copenhagen SE	555,049	617,751	2,509	2,071	24
Eurex	161,855,167	155,988,661	8,284,928	5,997,178	2
Euronext	52,732,215	56,689,805	3,397,160	2,781,462	4
JSE South Africa	9,425,032	8,655,357	149,848	96,773	14
OMX Stockholm SE	16,460,920	14,567,900	156,242	99,384	7
Oslo Bors	677,615	764,376	7,192	5,449	23
RTS SE	51,278	157,325	48	146	30
Tel Aviv SE	8,316	10,921	108	98	31
Warsaw SE	3,517,782	4,132,749	23,437	14,651	18
Wiener Borse	116,458	112,880	4,075	2,148	28
ASIA, PACIFIC					
Australian SE	66,195	67,425	913	888	29
BSE, The SE Mumbai	373,575	252,506	3,546	1,135	25
Bursa Malaysia Derivatives	1,088,419	331,218	12,092	4,518	21
Hong Kong Exchanges	11,805,613	8,105,877	865,113	473,457	11
Korea Exchange	55,608,856	62,932,780	2,618,437	2,252,537	3
National Stock Exchange India	23,354,782	10,557,024	187,029	63,828	5
Osaka SE	14,583,283	13,231,287	1,501,917	1,062,755	10
SFE Corp.	4,622,207	4,288,869	NA	NA	17
Singapore Exchange	16,428,769	13,607,659	618,116	499,049	8
TAIFEX	14,634,573	9,953,118	460,468	265,298	9
Tokyo SE	10,306,359	9,500,102	1,076,798	745,791	12
TOTAL	754,468,834	665,989,801	-	-	

주: NA : not available

<표 2> 거래소별 주가지수옵션시장 비교

	거래량(계약수)		거래금액(백만달러)		거래량 순위 (2004기준)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AMERICAS					
American SE	40,985,108	33,137,709	174,991	109,849	6
BM&F	89,965	-	NA	-	29
Bourse de Montreal	336,544	961,650	1,245	912	25
Chicago Board of Trade (CBOT)	762,007	263,629	50,580	24,773	22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CBOE)	136,679,303	110,822,096	7,624,273	4,897,434	2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6,451,862	5,168,914	1,685,498	1,216,647	14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ISE)	40,886,923	23,979,352	179,449	79,524	7
MexDer	35,989	-	-	-	32
New York Board of Trade (NYBOT)	181,215	110,079	100,785	44,860	27
Options Clearing Corp.	-	-	NA	NA	35
Pacific SE	14,119,270	15,744,139	56,501	51,211	11
Philadelphia SE	25,360,908	19,746,264	96,201	61,093	9
Sao Paulo SE	1,589,765	1,600,461	12,191	7,547	19
EUROPE, AFRICA, MIDDLE EAST					
Athens Derivatives Exchange	941,387	1,388,985	7,776	7,598	20
BME Spanish Exchanges	2,947,529	2,981,563	29,216	22,297	15
Borsa Italiana	2,220,807	2,505,351	190,311	175,117	17
Copenhagen SE	1,299	8,440	6	27	34
Eurex	117,779,232	108,504,301	3,645,977	2,577,694	3
Euronext	99,607,852	103,986,651	2,587,865	1,789,470	4
JSE South Africa	11,268,763	10,505,417	7,557	6,462	12
OMX Stockholm SE	8,947,439	6,371,381	84,158	44,151	13
Oslo Bors	681,783	543,090	7,298	5,791	23
Tel Aviv SE	36,915,103	29,353,565	437,944	264,375	8
Warsaw SE	124,392	153,106	13	7	28
Wiener Borse	40,855	27,680	1,873	720	31
ASIA, PACIFIC					
Australian SE	794,121	630,900	23,754	13,483	21
BSE, The SE Mumbai	56,046	43	383	-	30
Hong Kong Exchanges	2,133,708	2,150,923	188,094	147,004	18
Korea Exchange	2,521,557,274	837,724,956	23,924,106	20,733,926	1
National Stock Exchange India	2,812,109	1,332,417	22,887	7,516	16
Osaka SE	16,561,365	14,958,334	1,720,252	1,202,136	10
SFE Corp.	523,428	585,620	NA	NA	24
Singapore Exchange	247,388	289,361	12,102	13,253	26
TAIFEX	43,824,511	21,720,084	809,726	337,127	5
Tokyo SE	17,643	98,137	1,788	7,384	33
TOTAL	3,137,482,893	3,357,354,658	-	-	

주: NA : not available

2.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원인

지난 30년간의 자본시장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생상품들의 혁신적 개발은 놀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주식, 채권, 전환사채, 그리고 옵션 및 선물과 같은 익숙한 금융상품을 대체하여 수많은 유형의 상품들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은 금융시장 매니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들이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상품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혁신적 상품이 개발되게 된 원인들로서는, 크게 보아 ① 통화 및 이자율 같은 금융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의 증가 ② 정부규제에 대한 회피 유인 증대 ③ 소득세제의 비일관성 활용 가능성, ④ 위험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분석능력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분해(Disaggregation)과정으로, 전통적인 금융계약들, 예를 들어 주식 및 채권들은 각각의 구성부분들로 분해하여 별도로 상품화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공채는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분해되어 왔다. 둘째, 재결합(Recombination)과정으로, 전통적 금융상품의 분해된 구성요소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결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한 이자지불이 특정 주식가격지수의 값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위험 재배분(Risk Re-allocation)과정으로,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금융혁신상품이 개발되어 상품가격, 이자율, 환율, 그리고 다른 위험들에 대한 헤징 또는 투기(speculation)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사항은 '세제의 비일관성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현상이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세 등 기존 조세가 각종 금융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체에 부합되게 과세되지 못하는 맹점(loop-hole)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이에 대한 조세정책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3. 파생금융상품개발과 소득과세의 한계³⁾

가. 확정 및 불확정수익 간 구분에 따른 소득세의 한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융상품 관련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시 소득의 성격 및 과세시점(timing)을 결정할 때 ‘확정수익과 불확정수익 간의 구분’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외견상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 금융이론상의 결론이다. 따라서 혁신적 금융상품에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면 소득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수많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도 이상적이지는 못하다.

이론적으로는 자산의 가치변화분에 대해 소득과세를 할 수 있지만, 세무행정상의 집행 가능성, 납부세액 확보능력, 그리고 정치적 수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실현사건(realization events)’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의 발생에 의해 과세가 되는 소득세제도가 만들어졌다. 아래의 예를 통해 드러나듯이, 소득세는 현금을 수취하기도 전에 종종 소득을 과세해야 하는 확정수익 자산들에 대한 엄격한 과세처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례 1> [발행할인채(Original Issue Discount), 무이자사채] 한 기업이 채권자에게 3년 후 13,310원을 지불하는 채권을 발행한다. 이러한 채무에 대해 어떤 이자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무이자사채(zero-coupon bond)’라고 불린다. 투자자는 이 채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10,000원에 구입한다.

<사례 1>에서의 투자자는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3,310원의 수익을 받지 못하지만 첫 해 1,000원, 둘째 해 1,100원, 셋째 해 1,210원을

3) 본절은 Warren(1993 및 2004)의 분석을 요약 정리함.

이자소득으로서 자신의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무이자사채를 발행할인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액면가액인 13,310원보다 할인한 10,000원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그 차액을 3년간 배분하는 방법은 ‘만기수익률’ 또는 ‘만기이율(the yield to maturity)’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자율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인데, 투자원금에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명목상환금액에 달하게 하는 것이다. <사례 1>의 경우 $10,000원 \times (1.1)^3 = 13,310원$ 이므로 만기이율은 연 10%이다.

실현주의 과세원칙을 따른다면 10,000원을 주고 산 자산을 13,310원에 판 거래에 대하여 처분시점에 소득금액 3,310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이자)발행할인채의 경제적 실체는 역설적으로 이자 그 자체이므로, 미국에서는 할인액을 지급시기로까지 과세연기하지 않고 경제적 실체에 부합되도록 한다. 즉, 미국세법은 만기이율을 상정투자의 복리금액에 매년 적용하여 첫 해에는 1,000원이, 둘째 해에는 1,100원($= 0.1 \times 11,000원$)이, 셋째 해에는 1,210원($= 0.1 \times 12,100원$)이 이자소득으로 발생하고 이들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발전되기까지 1965년의 대법원판례, 1969년의 세법개정, 1982년의 세법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예외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만기이율’ 또는 ‘실효이자율’ 과세방식은 소득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지급액(fixed income)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과세시에는 일종의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과세처리방식을 택하는 근거나 정당성은, 간단히 말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복리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처지의 실제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기이율에 기초하여 실효이자를 묵시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보통의 채무자에게도 적용되게 되어서 만기일 전에 실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떤 확정수익 금융상품이 공개시장 내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시장 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 발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만기일의 명목상환가액을 만기계약기간 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도출한다. 이때의 이자율을 이용하여 매년 소득으로 포함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다.

이러한 과세처리방법은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우와 대조된다. 예를 들어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회사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그 주식이 매도되거나 처분되어 손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소득세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근거는 간단히 말해, 어떤 지급액을 수취할 것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자산들을 매년 재평가하지 않는 한, 이익이나 손실이 매도 등 다른 처분을 통해 실현되기 전까지는 소득세 부과를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다리고 보자(wait-and-see)’는 식의 과세방법¹⁾은 주식, 투기계약(도박 포함), 선도계약 그리고 옵션 같은 불확정수익자산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 중 마지막 두 유형인 선도계약과 옵션계약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특별히 중요하므로 이들의 특성과 현행 과세방식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자.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팔기로 한 미이행계약(executory agreement)이다. 보통 선도계약이 작성되는 시점에는 어떤 금전도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이 실행 또는 처분되어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될 때까지 어떤 세무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옵션의 경우, 거래의 일방인 구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에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살 수 있는 권리가 보통 ‘콜옵션’이고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이다. 반면 사거나 팔 의무를 지는 쪽, 즉 옵션매도자인 발행자(writer)는 계약시점에서 대가로서 ‘프리미엄(premium)’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받는다는 점이 선도계약과 다르다. 옵션구입행위는 자본지출로 취급되어 옵션을 행사하거나 처분하기 전까지는 어느 쪽에게도 세무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 만일 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지나간다면 옵션발행자는 마치 그가 옵션을 판 것처럼 취급된다. 만일 콜옵션이 행사된다면 옵션발행자는 해당 자산의 판매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콜옵션을 매입한 소유자는 프리미엄을 취득가액(cost basis)에 포함한다. 만일 풋옵션이 행사된다면 발행자는 프리미엄 금액만큼 취득가액을 줄여야 하고 옵션소유자는 그 금액만큼 판매가를 낮추어야 한다. 만일 옵션이 행사일 이전 중간에 판매된다면 이익이나 손실이 인식되는데 그 손익 인식의 성격은 기초자산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도 및 옵션계약들은 계약 내 특정된 기초자산들의 실제 인·수도 약정일이 아니라 실행가능일에 계약 일방에서 타방으로 금전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정산 행위가 옵션 및 선도계약들의 과세사건(taxable events)들이다.

간략히 요약하면, 확정수익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만기수익률 기준으로 매년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불확정수익률 자산의 경우에는 ‘기다리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이원적 금융소득과 세체계가 어떠한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를 갖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금융자산을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다면 실행가능한 과세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재무이론적 등가관계

재무이론에 따르면 확정 및 불확정수익 자산 간 구분은 결코 명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적 등가원칙’에 따라 한 유형의 자산을 다른 유형의 자산(들)을 이용하여 그 경제적 실체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적 등가원칙의 두 가지 사례인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와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을 살펴보자. 본고의 목적은 해당하는 재무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소득세 과세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적인 사항은 생략

하면서, 가급적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설명하고자 한다.

1)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

다음 네 종류의 자산 즉, ① 한 단위의 무배당주식 S , ② (K 라는 액면가액의) 무위험 무이자사채(zero-coupon bond) B_K , ③ 특정주식 한 주를 K 에 살 수 있는 콜옵션 C_K , ④ 그 주식을 K 에 팔 수 있는 풋옵션 P_K 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네 자산 중 두 번째 자산인 무이자사채만이 확정수익에 적용되는 만기수익률 방식으로 과세되는 반면, 주식, 콜옵션, 풋옵션에 대한 수익은 불확실하므로 소득세 과세상 ‘기다리고 보자’식의 접근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네 자산 각각의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이들 자산 간에는 어느 하나가 다른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기본관계식이 존재한다. i)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무이자사채의 미래 상환액(액면가액) K 와 동일하고, ii) 옵션의 행사가능일이 무이자사채의 상환일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자. 재무이론에서 말하는 ‘풋콜 패리티’는 거래비용과 신용위험을 무시할 경우 행사일 시점에서의 이들 자산가격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식 1) S + P_K = B_K + C_K$$

직관적으로 (식 1)을 살펴보자. 식의 좌변이 의미하는 바는 투자자가 한 주의 주식과 하첨자로 표시된 K 라는 행사가격의 풋옵션 양자를 소유할 경우, 행사일 당일의 주식 S 의 가격만큼을 갖되 최소한 K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산구성을 하는 셈이다. 만일 주식값이 K 보다 낮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식의 우변이 의미하는 것은, 행사일 당일 K 만큼을 상환하는 무이자사채와 K 라는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K 만큼의 자산구성이

치를 보장받는 것이다. 주식 S의 값이 K 보다 커지면 콜옵션을 행사하여 만기상환되는 사채상환금액 K 로 주식 한 주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식과 풋옵션을 합한 자산가치가 무이자사채와 콜옵션을 합한 자산가치와 행사당일에 동일해야 한다면, 이들 자산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한 행사일 이전 기간에도 등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익거래자(arbitrageur)들이 비싼 포지션을 팔고 싼 포지션을 사서 차액만큼의 무위험이득을 얻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간단한 수치적 예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2> [풋-콜 패리티] 현재 12,000원에 거래되는 무배당 주식 한 주를 생각해 보자. 1년 후 12,000원의 행사가격으로 이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옵션시장이 있고, 1년 만기 무이자사채의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자. 투자자 甲은 그 주식과 함께 풋옵션을 사서 1년 후 12,000원 이상으로 주식값이 올라버린다면 풋옵션 계약하에서 12,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값은 그 시점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주식가격이 12,000원 미만으로 되어버린다면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팔아 12,0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투자자 乙은 무이자사채를 10,900원($=12,000\text{원}/1.1$)에 사면서 동시에 콜옵션도 함께 구입한다고 하자. 1년 후 무이자사채가 상환되어 12,000원의 확정수익금을 받게 되고, 그때 만일 주식가격이 12,000원을 초과한다면 콜옵션하에서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거꾸로 주식가격이 그 미만이 된다면 콜옵션은 가치가 없게 되지만 여전히 무이자사채 상환액 12,000원은 갖고 있게 된다. 즉, 주식, 콜옵션, 풋옵션의 미래시점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투자자 甲과 乙은 1년 후 정확히 동일한 금전적 입장(position)에 처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주식과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

은 그러한 금융상품계약에 대한 시장이 가장 경쟁시장에 근접되도록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풋-콜 패리티 관계는 기초자산과 그에 파생되어 생성된 옵션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기만 하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게다가 <사례 2>에서 표현한 등식관계는 네 종류 자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주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확정금액(K)만큼 받을 무이자사채를 소유하면서 같은 날 K 라는 행사가격으로 내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식 2) S = B_K + C_K - P_K$$

따라서 한 주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항상 무이자사채 한 단위를 소유하면서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파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시가가 B_K 인 주식을 사면서 그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을 파는 것은 시가가 B_K 인 무이자사채를 사는 것과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게 된다($S + P_K - C_K = B_K$).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행사가격이 무이자사채의 상환금액과 같고 양 옵션의 행사일이 무이자사채의 상환일과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위 식의 우변은 이러한 가정하에서 항상 실제 주식과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조작된 '합성(synthetic)주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풋-콜 패리티 관계가 확정수익과 불확정수익 간의 구분에 기초하는 기존 소득세제에 어떠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만일 현대의 금융시장 내에서 이상의 합성주식을 개발해낼 수 있다면 세금문제를 떠나 동일한 결과를 낳는 두 포지션과 이들에 대해 각기 다르게 과세되는 체계를 갖게 된다. 실제 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보자'는 식의 과세방식이 적용되는 반면 합성주식의 무이자사채(zero-coupon)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수익기준의 이자에 대한

연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사례 2>에서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거래비용 및 신용위험을 과감히 무시하였고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배당지급이 없다고 가정했다. 또한 예시된 사례들은 특정일이 도래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유럽식 유형의 옵션들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는 한계도 있다. 통상 미국옵션이라고 불리는 많은 옵션거래들은 특정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을 거래비용, 신용위험, 배당지급, 그리고 미국옵션을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하더라도 보다 복잡한 수식만 필요할 뿐, ‘풋-콜 패리티 관계를 이용하여 차등과세되는 부분들로 재구성하면서도 정확히 동일한 금융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본결론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본고의 목적은 소득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협의 개념을 여타 관련된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결론을 가장 간단하게 예를 통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

풋-콜 패리티 관계식만이 확정수익자산과 불확정수익자산 간 구분에 기초한 현행 소득세제를 위협하는 유일한 금융적 등가원칙은 아니다. 위의 <사례 2>는 한 주에 12,000원에 거래되는 주식과 1년 후 12,000원의 행사가격인 콜 및 풋옵션이 존재하는 경우였다. 물론 1년 후 주식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00원 아니면 20,000원 두 가격 중 하나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가정하자. 또한 단순화를 위해 한 주의 주식 중 일부분을 살 수도 있고 이자율 10%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자.

투자자 丙과 丁은 주식가격이 10,000원으로 떨어질 위험을 지지 않으면서 20,000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자. 투자자

丙에게는 12,000원의 행사가격인 콜옵션을 사는 방법이 있다. 만일 주
 식가격이 20,000원이 되면 丙의 콜옵션 가치는 8,000원이 될 것이다.
 만일 반대로 주식가격이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콜옵션의 가치는 없게
 된다. 丁이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돈을 빌려 주식을 구입하여
 합성콜옵션을 구성하는 것이다.

<사례 3>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 투자자 丁은 콜옵션 구
 입자 丙과 달리 7,300원을 빌려 한 주에 12,000원하는 주식의 8/10을
 9,600원에 샀다. 1년 후 그 주식가격이 10,000원이 되면 丁의 8/10 지분
 가치는 8,000원에 해당하는데 대출원금 7,300원과 이자 10%를 갚을 만
 큼이 된다. 만일 주식가격이 20,000원이 된다면 지분가치는 16,000원이
 되어 대출원리금을 갚고도 8,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미래
 의 두 가지 상황 모두의 경우에 콜옵션을 구입했던 투자자 丙과 정확
 히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쟁시장에서는 무위험 차익거
 래의 기회가 소멸된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때, 丁의 이러한 투자포지션
 에 대한 순비용은 9,600원에서 7,300원을 차감한 2,300원이어서 투자
 자 丙이 구입한 콜옵션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우리는 유명한 Black-Scholes 옵션가격모형 내의 직관적 논리를 이용
 하여, (a) 대출받아 주식의 일정량을 사는 것과 (b) 동일한 주식에 대한
 콜옵션 일정량을 사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B-S
 모형은 콜옵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개발되었다.
 또한 Black-Scholes 모형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사례 3>에서 투자자
 丁이 실행한 것처럼 차입과 주식매입을 결합한 합성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주식과 채권을 결합하면 콜옵션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그 이
 유는 주식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빌린 돈보다는 항상 높게 만들어 하향
 위험성은 제거되면서 주식가치는 고정 부채액보다는 크게 되는 상향 가
 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중요한 점은, 어느
 시점에서건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과 ‘옵션을 사는 것’이 동일한 결과

를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丁이 실행한 방식처럼 합성옵션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항상 포지션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동태적 헤징(dynamic hedg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실제 주식시장에서 합성콜을 개발해내는 것은 <사례 3>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실행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와 그 기초원리는, 부채를 한 구성요소로 하는 합성옵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부채 같은 고정수익계약과 옵션 같은 불확정수익계약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전통적 소득세 과세방식은 현대 재무이론이 끊임없이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3) 조세정책적 시사점

현실세계에서도 위에서의 사례대로 온갖 종류의 완전한 금융계약들로 자산구성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소득세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과세방식의 선택가능성(선택적 과세대우) 문제이다. 만일 이 상에서 설명한 동등관계들을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가장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현시킬 수 있다면 납세자들은 확정수익 투자포지션과 그렇지 않은 투자포지션 간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납세자들은 세제상 우대를 받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확정과 불확정수익을 구분하는 현행의 세법체계를 위협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풋-콜 패리티를 이용하여 합성 무이자사채를 만들어낼 때 아래의 세 가지 포지션을 결합하는데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어느 것도 실제 채권에 적용되는 만기수익률 과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식 3) B_K = S - C_K + P_K$$

위의 식 우변에 대해 만기수익률(기준)방식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

서는 국세청이 먼저 투자자의 세 가지 자산구성 항목 각각을 확인하여 이들을 하나의 무이자사채로 통합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 어떤 사안이 고려되는가’라는 ‘과세실현 시점(realization)’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만일 납세자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거래에 따른 세금결과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는 이러한 차등과세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정수익은 보통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는 반면 불확정적인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거나 자본손실한도 규정에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율차이(Differences in Tax Rates)의 효과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과세를 받는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한 납세자에게는 세제우대 선택이지만 동시에 다른 납세자에게는 세제적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을 경우 총세수를 중시하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동태적 헤징에서 차입을 포함하는 투자포지션을 구축하더라도,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액을 금기에 소득공제할 수 있지만 상응하는 콜옵션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반면 채권자는 확정수익으로부터의 이자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채무자의 이득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득이 되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손해가 되어 세무당국이 세수중립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즉 거래쌍방에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따라서 쌍방의 거래당사자들이 납세자로서 그들에게 각자 가장 유리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소득세제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만일 채권자가 비과세 대상자라면 대칭적인 과세방식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손해가 나타나지 않아 과세당국은 세수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의 문제이다. 현대 재무이론이

확정 및 불확정수익자산 간 소득세 구분에 제기하는 도전을 가장 극명하게 예시할 수 있는 것은 조세차익의 가능성 때문이다. 조세차익이라는 표현은 보통 세금혜택을 보는 거래들을 말하는 데 사용되지만 납세자들에게 어떤 다른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이자사채와 콜옵션을 구입함으로써 합성적 주식매입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었던 풋-콜 패리티 경우를 되새겨 보자.

$$S = B_K + C_K - P_K$$

이 식의 우변을 음의 값으로 만듦으로써 음의 합성주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즉, 콜옵션을 발행하고 풋옵션을 사면서 명시적 이자 없이 일정액을 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주식을 소유한 결과 음의 현금흐름을 갖게 할 수 있다.

$$-S = -B_K - C_K + P_K$$

한 주의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투자자는 위 식의 우변에 음의 값을 갖는 합성지분을 만들면 세금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투자자의 포지션은 항상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세무신고 내용에는 차입에 따른 이자공제는 나타나지만 주식과 옵션을 처분할 때까지는 이득으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이전의 사례들을 조금 변경하여 설명해 보자.

<사례 4> [과세연기효과] 투자자 E는 2005년 1월 1일 어떤 주식 한 주를 12,000원에 구입한다. 동시에 현행 이자율 10%하에서 2006년 첫날에 12,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무이자사채를 발행하면서 10,900원을 받는다. 그는 또 그 주식에 대해 2006년 초에 행사할 수 있는 12,000원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2,3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발행하면서 또 동일한

행사가격의 풋옵션을 1,2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투자자 E의 2005년 순현금흐름은 세금문제를 떠나서 0이 된다.

<사례 3>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 후 주식가격은 10,000원이 되든지 아니면 20,000원이 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주식가격이 2006년 첫날에 10,000원이 된다면 E의 콜옵션하의 의무는 소멸되고 무이자사채 상환액 12,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12,000원 행사가격의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를 팔면 된다. 반면 주식값이 20,000원이 되면 그의 풋옵션은 쓸모없게 되지만 발행한 콜옵션 때문에 소유주식을 12,000원에 팔아야 하며 그 대금을 사용해서 채권상환을 하면 된다. 결국 주식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2006년의 회계상 순현금흐름은 없게 된다.

만기 상환액 12,000원과 현재가치 10,900원의 차액인 할인발행차금은 만기기간에 걸쳐 이자소득 공제되면서 주식이나 옵션의 손익은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지연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E는 2005년의 이자소득 1,100원을 공제하고 콜옵션 프리미엄 판매가 2,300원에서 풋옵션 프리미엄 구입가 1,100원을 뺀 1,200원의 옵션관련 순이익을 2006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주식가격이 오른다면 그의 2006년에서의 매각이익은 2,300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05년의 취득가액과 콜옵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06년에 판 12,000원의 행사가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2005년에 받은 2,300원의 콜옵션 프리미엄은 실현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풋옵션 구입비용 1,200원의 손실을 공제하면 순이익은 1,100원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콜옵션 발행에 따른 이득 2,300원에서 주식처분 손실 1,200원을 뺀 만큼 줄어드는데 이는 풋옵션 프리미엄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만큼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2006년의 순이익은 다시 1,100원이 된다. 어떤 경우이건 2005년에 (이자소득) 공제된 1,100원의 실현소득은 2006년으로 이연될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드러나듯이, 현대 재무이론상의 동등관계에 내재된 가능성들을 금융거래시에 충분히 활용한다면 납세자들은 투자소득에 대

한 과세를 연기시킬 수 있다. 만일 상쇄되는 이득에 대해 자본이득 세제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납세자들은 동등한 투자포지션에 대해 일관성 없는 과세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점까지도 누릴 수 있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예로 든 <사례 4>는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차익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재정차익이 특정한 거래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는 실제 세부사실들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사례 4>에서의 과세연기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로는 확정수익 성격의 이자가 상응하는 포지션 별로 할당될 수 있음이 밝혀져서 자본화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다. 구체적 파생금융상품 사례들

지금까지는 이론상의 혁신적 금융상품들이 소득세제에 어떻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를 재무이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세 가지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전술한 분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본다. 몇 가지 예들이 방대한 금융혁신상품을 모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예들을 통해 소득세제에 어떠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예인 ‘옵션을 가미한 내재옵션부 부채증서(Debt with Embedded Options)’는 기존의 계약을 간단히 결합하기만 해도 기존의 확정 대 불확정수익 구분에 기초한 차등과세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예인 ‘명목 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은 전통적 계약들에 대한 과세를 재검토해야 하는 세제문제에 대한 예를 제시할 것이다.

1) 내재옵션부 부채증서

일반적인 채권의 속성들을 갖고 있지만 이자나 원금지급이 불확정적인 투자계약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러한 채권에 옵션적 요소를 가

미하는 예로 간단한 ‘주가지수채권(stock index note)’을 들 수 있다.

<사례 5> [주가지수연계채권] 미국 내 한 기업이 5년 만기의 주가지수 성장형 채권(Stock Index Growth Note, 또는 Equity Linked Note)을 1,000달러의 명목가액으로 발행한다고 하자. 5년 후 이 채권의 소지자는 그의 투자액 1,000달러에 추가하여 S&P500 주가지수 상승률에 1,000달러를 곱한 금액만큼을 돌려 받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지수가 배로 증가하면 투자자는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 이 채권의 소지자는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1,000달러의 원금은 지급받도록 보장되어 있다. 단지 이 채무계약에 있어서 명시적인 이자지급은 없는 것이다.

이 계약이 1,000달러라는 최소한의 확정부분과 S&P500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득이라는 불확정부분 양자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소득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쾌하지 않다. 1991년 전까지 미국은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보장된 확정지급액과 불확정지급액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만기수익률 기준 과세를, 후자에 대해서는 추후과세(wait and see taxation)하는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위의 <사례 5>에서는 상환시 보장된 금액이 발행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5년간 확정지급액으로 배분해야 할 할인 발행차금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초기 대응방법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확정수익과 불확정수익을 따로 구입했을 때와 달리 과세처리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위에서의 ELN은 항상 발행자의 5년 만기 1,000달러짜리 무이자사채와 ELN 발행시 지수값과 동일한 행사가격의 S&P500 주가지수 현금정산 유럽형 5년 후 콜옵션을 결합한 것과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만일 지수가 5년 후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면 콜옵션은 휴지조각과 다름없어서 무이자사채는 1,000달러일 뿐이고 주가지수연계채권과 동일하게 된다. 만일 S&P500이 초기값보다 오른다면 콜옵션은 오른 만큼의 가치

를 갖게 되고 무이자사채는 여전히 1,0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들 두 값의 합은 따라서 ELN 소유자에게 지불할 금액이 된다. 만일 무이자사채와 옵션을 따로 구입할 경우 이자소득을 인식하여 과세처리하여야 하지만 ELN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1년 미국 재무부는 지수연계채권은 무이자사채와 콜옵션으로 이원화하고 이자는 무이자사채 부분에 대해 5년간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발행시점 당시 이 무이자사채의 가치는 $1,000\text{달러}/(1.1)^5=621\text{달러}$ 일 것이다. 이 채권소유자가 지불한 나머지 379달러는 내재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의 결과 이 채권의 379달러에 해당하는 발행시점의 할인발행차금은 만기수익률 기준에 따라 5년간 소득에 포함되며 옵션에 대한 손익은 5년 후 감안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계약권리들간의 대체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례 5>와 같은 상품을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주가지수연계채권을 시장이자율하에서의 1,000달러 대출과 5년 후 S&P500의 1,000달러 초과분에 해당하는 복리이자상당액과 교환하도록 선도계약의 합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1,000달러 전액에 대한 5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기간만료 후에 불확정부분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다. 1993년 재무부는 주식연계채권의 전체 구입금액에 대해 이자를 산정한다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차기정부로의 정권이양 과정중 공식 발표는 철회되었다.

결국 풋-콜 패리티는 <사례 5>의 상품이 분해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무이자사채에 콜옵션을 더한 것은 그 기초자산에 풋옵션을 더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례 5>에서의 결과는 1,000달러짜리 S&P500지수채권과 함께 지수초기값과 동일한 행사가격의 5년 풋옵션을 구입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을 각자 따로 보면 이들 중 어떤 자산도 만기수익률 과세방식으로 과세되는 확정지급액이 없게 된다.

주가지수연계채권과 관련된 이런 유형의 가능성은 신종 금융상품거래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분해나 통합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단순한 상품도 확정과 불확정수익 간 구분의 상이한 쪽에 해당하는 전통적 계약부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재무부의 규제입장이 변화하는 것은 만기수익률과세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행세법하에서 그러한 행동을 위한 정책수단이 빈약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기법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시가평가주의', 또는 연간 수익 산정 등은 옵션부 내재증서들에 법률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처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법들이 별도의 단독옵션이나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계약들이 제기하는 세제문제는 그러한 계약들이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확정 대 불확정수익 간 구분이 이론적으로 명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전통적인 구성요소들도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지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명목원금계약(가상적 원금계약)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도 일종의 신종금융상품계약인데 계약금액 자체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지만 일종의 가상적인 금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지불금의 소유권이 바뀌는 계약이다. 두 가지의 이와 같은 계약의 종류를 설명할 것인바, 첫 번째는 간단한 '이자율스왑'이다.

<사례 6> [이자율스왑] 납세자 K와 L이 5년 계약을 맺어 K는 L에게 매년 ₩10,000이라는 가상적인 명목금액에 대한 10%의 확정이자를 지불하면서 L은 K에게 동일한 10,000원이라는 명목원금금액에 대해 매년 변동

이자율 지급을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들 간에 실제로 주고 받는 금전은 매년 서로간 지급해야 할 금액들의 차액뿐이다.

K와 L이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은 이자율의 향후 변동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을 하고 있거나 헤지하기를 원하는 자산 또는 부채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현재의 재무부규칙에 따르면 K와 L은 매년 정기적 순지급액만큼의 연간소득 및 공제액을 갖게 된다.

<사례 6>의 이자율스왑은 원금 10,000원인 채무에 대한 일련의 현금결제 부채선도계약으로 분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와 Y가 계약을 맺어 X는 향후 5년간 매년 Y로부터 10,000원을 사전에 합의한 10%의 이자율로 빌린다고 가정하자. 만일 X나 Y가 모두 프라임레이트 같은 변동이자율로 돈을 대출받거나 대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특정 해에 그 이자율이 10%를 넘어버린다면 그 해의 선도계약은 Y가 X에게 초과이자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할 것이고 이는 또한 이자율스왑하에서 L이 K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동일하다. 만일 거꾸로 프라임레이트가 10%보다 떨어진다면 선도계약은 X가 Y에게 부족액만큼 지불함으로써 정산될 것이고 이는 스왑하에서 K가 L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같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10년 후에 10,000원을 1년간 빌려주기로 오늘 약속할 때의 가격은 6개월 후에 10,000원을 1년간 빌려주기로 지금 약속할 때의 가격보다는 높은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현금결제 선도(이자율)계약은 통상 '이자율의 (만기)기간 구조'라고 불리는 요인을 반영하여 매년 다른 이자율을 갖게 될 것이다. <사례 6>의 스왑예와 같은 10%의 단일 이자율은 이러한 상이한 일련의 선도이자율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스왑지급액이 일련의 선도이자율계약하의 지급액과 다른 만큼 그 차액은 지급연도의 소득이나 비용이라기보다는 자본수익 또는 선불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대가치과세론(Expected Return Taxation)하에서 취했던 접근방법이다.

Shuldiner⁴⁾교수가 강조하였듯이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연간확정이자지급액을 소득으로 포함하고 또 비용공제하도록 요구하는 장기채권에 대한 전통적 과세방법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례 6>에서의 스왑이자율이 연간선도이자율의 평균이라면 통상적인 장기채권의 확정이자율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스왑을 일련의 선도이자율계약으로 분해하는 것은 장기소비임대차들 또한 분해되지 않는 한 과세방식에서 상충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과세처리문제는 금전임대차 같은 전통적인 금융계약에 대한 기존의 확립된 과세처리방법을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게 된다. 이자율의 만기구조 효과가 충분히 커서 그러한 상품분해시 고려해야 하는지의 여부보다는 신종금융계약에 대한 문제가 언뜻 보기에는 별로 관련없어 보이는 장기금전임대차 같은 전형적 계약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유형의 명목적 원금계약은 ‘이자율캡’으로, 변동이자율이 사전에 고정된 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그 초과된 부분에 명목적 원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만큼의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을 맺게 되면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을 상한으로 하여 채무액이 제한된다.

<사례 7> [이자율캡] M은 N에게 일정명목원금액인 10,000원에 향후 3년간 10%를 초과하는 프라임레이트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N은 M에게 계약체결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일정금액을 지불한다.

<사례 6>의 이자율스왑이 일련의 현금결제 이자율선도계약으로 분해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례 7>의 이자율캡도 일련의 현금결제 이자율옵션으로 분해될 수 있다. N은 사실상 M에게 10,000원을 매

4) Shuldiner(1992) 참조.

년 10% 이자율로 빌릴 수 있는 옵션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서 프라임레이트라고 가정한 시장이자율이 10%를 초과하여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금결제 옵션하에서건 캡하에서건 추가적인 지급은 없게 되나, 거꾸로 시장이자율이 10%를 넘게 되면 현금결제 옵션과 캡하에서 모두 초과분만큼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규칙은 <사례 7>에서의 캡에 대한 지급액을 일련의 옵션에 대한 지급액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만일 계약 체결 시점에서 <사례 7>의 프라임레이트가 설정한 캡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면 거래 쌍방이 프리미엄을 일종의 금전대차로 처리하고 캡의 '시간적 가치부분'은 소득세 세무목적상 이자로서 간주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한 계약은 내가격(in-the-money)상태에 있게 되는데 결제일이 이미 도래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그러한 지급들이 이자계산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확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약하면, 옵션이 내재된 채권과 같은 명목적원금계약을 통해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구성부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스왑과 같은 신종상품계약들에 대한 과세문제 또한 겉으로는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전통적 계약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미연방재무부규칙은 현재 캡을 옵션으로 분해하지만, 아마도 장기금전대차는 그렇게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왑은 선도계약으로 분해하지 않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불확정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추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격 상태에 있는 캡은 기능적으로 금전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캡에 대한 이자계산은 하도록 개정하려고 한다.

라. 기업의 자사주 관련 절세전략

McDonald(2004)는 기업들이 자사주에 대해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을 설계하여 절세전략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원래 (법인)기업은 자사주와 관련된 거래로부터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세법은 1984년에 자사주에 대한 옵션거래로부터의 손익에 대해서도 이를 확장하였다. 상장기업들이 자사주식에 대한 옵션을 발행 또는 매입하는 현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warrants), 임직원에게 대한 스톡옵션 같은 콜옵션(call option)을 발행하거나, 자사주 (재)매입계획의 일부분으로서의 풋옵션(put option)을 파는 것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풋을 팔고 콜을 사는 것과 같은 암목적 차입을 통한 옵션거래가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차입활동인 합성옵션(synthetic option)보다 조세혜택이 있음을 보이며, 또 역으로 warrant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묵시적 대출을 통한 옵션거래 또한 세금혜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기업은 조세측면에서 볼 때 채권과 신주인수권(warrants)을 결합한 bifurcated convertible bonds를 발행하는 것이 이에 상응하는 표준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유리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최신 금융공학분야의 발전으로 claims를 재포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실질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서 기존의 기업주식들을 가장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 $S=B+C-P$ 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하기보다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사서, 이 자지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세절약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만일 기업들이 이 절세전략에 눈을 뜨다면 법인소득세의 장기적 세수충분성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최근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사례

1. 금융기관의 판매실태

2002년부터 저금리시대에 절세상품으로 ‘엔화정기예금’, ‘엔화스왑 정기예금’, ‘선물환엔화예금’ 명칭의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어 시판되어 왔다. 2005년 8월 말경부터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여부가 예금 가입자, 판매은행, 과세당국 간에 초미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특히 2004년 9월 17일에는 은행연합회가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고, 시중은행들은 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던 엔화스왑정기예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게 된다. 그 후, 국세청은 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재정부의 유권해석이 2005년 3월 30일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5년 5월 여러 종류의 엔화스왑예금 중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방침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확정통보하면서 수정신고를 권장하게 되었다.

엔화스왑예금은 개인고객이 엔화정기예금 가입(대부분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 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신종금융상품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판매되었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후 만기에 다시 원화로 전환함으로써 엔화예금금리와 스왑레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금가입자

들은 엔화예금에 대한 명목금리인 연 0.05% 정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스왑레이트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원화 정기예금보다 0.5~1.0%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거주자외환정기예금’이라는 저축종류의 통장을 교부하고 동시에 체결한 ‘선물환계약’ 계약서는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하면서, 선물환차익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판매되었다. 엔화예금잔고는 256억엔('02.12말) → 1,944억엔('03.12말) → 5,867억엔('04.8말) → 540억엔('05.2말)으로 변화하여,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았던 2004년 8월 말경 최고에 달했다가, 국세청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과세여부가 구체화된 후 1/1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은행들이 2002년 1월부터 판매한 엔화예금 총액은 7조여원 정도, 은행별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5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선물환의 본질과 과세결정

문제의 엔화스왑예금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내 거주인의 외화예금가입이 허용된 이후 선물환계약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와 대비해 보자.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가입하던 보유하던 외화를 입금하던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했던 경우에 발생하는 총수익은 예금이자와 환손익에 의해 구성된다. 정기예금 해지나 만기일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서 이자소득을 제외하고는 환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선물환차익이 환율에 의한 환산이익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과세당국은 이를 ‘금전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이기 때문에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경우 금융기관에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소득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엔화스왑예금 취급은행에 대하여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원천징수 미이행 부분에 대해 2005년 5월 31일 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각 은행은 예금가입자들에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라는 내용과 은행의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하여 예금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2005년 5월 '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통지토록 하였다.

3. 소득의 성격 및 개인신고 등 쟁점사항

본 사건을 계기로 소득세의 과세여부 못지 않게 소득의 성격(character)을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이자손익의 원천지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이 국내금융기관에서 개발되어 주로 내국인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어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쟁점사항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지 여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자본이득과세(capital gains taxation)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시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 내에서 비과세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원천분리되는지, 아니면 종합과세되는지가 쟁점사항일 뿐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주가지수연계예금, 채권, 펀드 등을 들 수 있다.

신고의무는 발생되나 세부담 증가여부는 타 통상소득의 규모와 공제여부 등에 달려 있게 된다. 제일 바람직했던 해결방법은 소득발생

구성부분 중 선물환차익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기준금액 이상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제대로 원천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별 해당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간 중 수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세청 안내문상의 수정신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중심이고, 해당 금융상품구입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총이자소득을 포함하더라도 4천만원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계약종료된 예금자들에게 대해 추가적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준금액 미만 및 초과여부에 따라 엔화스왑예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대우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도 2002년과 2003년 귀속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은 종료되었고 이들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도 쟁점사항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유권해석일 이후인 2004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2002년과 2003년 귀속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times 미납일수 \times 3/10,000으로 계산하는데, 이 중 미납부세액을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에 누락하여 금번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본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 + 은행이 원천징수 미이행한 세액) 중 은행의 원천징수 미이행세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은행의 귀책사유부분을 개인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4. 미국의 외화표시 금융상품 과세현황

가. 외국통화(Foreign Currency) 표시 금융상품거래:

미국세법규정 : IRC § 988

미국에서는 외국통화의 판매나 처분은 미국세법상 자산(property)의 판매나 처분으로 간주되므로 외국통화손익은 그 외국통화를 판매하거나 처분하는 시점에서 인식된다. 또한 일반적인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은 청산일까지 손익인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손익의 성격은 계약 또는 관련 상품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자본손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이나 자본소득(capital gains)이냐에 따라 연방소득세가 차등과세되므로 외국통화가 관련된 경우 해당 거래가 통상손익으로 처리되는 § 988거래인지 아니면 자본손익으로 처리되는 § 1232, § 1233, § 1234(A), § 1236, § 1256(f)(3) 등을 적용받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미국은 1986년 세법개정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특별 미국세법규정(IRC § 985-§ 989, 통칭하여 Subpart J 또는 외국통화규정)'을 제정하여 그 이전보다 상당히 상세하게 외국통화거래에 관한 세무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⁵⁾ 1986년 세법개정시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래시 표시된 통화가 기능성통화이면 현금(money)처럼 간주되는 반면 비기능성통화라면 세무상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는 재무회계 개념을 이용하는 것

5) 1986년 이전의 외국통화에 관한 기본 세무처리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음.

1. 미국달러와 달리 외국통화를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외국통화는 달러로 측정된 취득원가(basis)를 갖고 있었고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손익이 발생하였음.
2.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그 기초자산의 거래에 따른 손익과 분리하여 세무처리하여야 했음.

이다. 거래내용에서 외화표시손익은 납세자의 기본적 경제환경에서 사용하는 통화, 즉 기능통화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외국통화에 근거하여 지불되는 선도계약, 선물계약, 옵션과 기타 유사한 금융상품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세법 제988조 외국통화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금융상품들의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이거나 미국세법 제988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대여금(loan)으로부터의 손익은 미국 달러이자와 예상되는 외환손익으로 구성되므로 이자부분을 외환손익과 구분할 필요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상품의 수익률 중 예상외환손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외국통화손익을 이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다음의 6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통화손익은 미국세법상 이자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IRC § 988 (a) (2), Treasury Reg. 제1.988-3조(c))

- ① 비과세채권(tax-exempt bonds)에 관한 외국통화손실
- ② 연방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 미만 차입금과 관련된 헤징
- ③ 현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가 반영된 차입금의 헤지
- ④ 외국통화 스왑의 선불
- ⑤ 외국통화 헤지
- ⑥ 미국 국세청 지침

나. 외국통화의 헤지규정 (IRC section § 988(d))

외국통화규정하에서 미국세법 제988조 거래에 귀속되는 외국통화손익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 특성은 일반손익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헤징 거래를 통합된 형태로 보아 세무처리하는 것은 수익, 비용, 이익 및 손실과 관련한 특성의 결정, 귀속시기 그리고 원천지국을 구분하는데 바

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세법 제988조(d)는 미국국세청으로 하여금 미국세법 제988조 헤징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통합하여 단일거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미국국세청은 외국통화손익을 이자로 간주하는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규정도 있다.(재무부 규칙 제1.988-3조(c)(1))

결국 미국에서도 외국통화예금이 선물환(forward exchange contract)과 결합되어 거래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격의 헤징거래(Qualified Hedging Transaction)인 경우⁶⁾에 통합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세법 제988조(d)는 미국국세청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합된 헤징거래로 다루는 미국재무부규칙은 오히려 그 적용대상을 좁게 해석하여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통합된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5.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시사점

조세회피적 재정행위(arbitrage)는 한 국가 내 세법들 간 차이 또는 국가 간 세법들의 차이 등 차등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것들이다. 본고에서 다루었던 엔화스왑예금의 사례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포괄적 소득세제의 기본틀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세소득을 11가지 소득종류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열거주의 방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으나⁷⁾ 양도소득·사업소득·부동

6) 적격의 헤징거래는 ① 납세자가 보유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 환율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또는 납세자의 현재 및 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체결한 거래, ② 미국세법 제988조 헤징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국세청이나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거래임.

7) 2001년 말 소득세법 개정시 이자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3호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산입대소득의 경우에도 차등과세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적 상품개발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금리의 탈동조화(decoupling)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및 시장금리와 대비해 볼 때 한국의 금리가 더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콜금리(3.25%)와 미국의 연방기금금리(2.75%)간 0.5%포인트 정책금리 차이는 시장금리의 경우 미국이 2004년 말 한때 높았다가 최근 역전현상이 해소된 실정에 있다.⁸⁾ 국내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당분간 한국 통화당국이 현 (저)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주요국들은 2003년 말 이후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를 인상하는 추세를 지속할 경우 국내자금의 해외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금융상품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엔화스왑예금 과세는 외화표시 타 유사상품과의 차등과세 또는 형평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편드나 해외채권의 환차익부분, 완전 헤징된 약세외국통화표시 채무계약, 외화차입과 통화스왑, 국내거주인의 해외부동산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환차익 부분에 대한 경우이다. 궁극적인 해법은 외환손익의 금액, 손익의 귀속시기, 손익의 특성(자본손익 또는 일상손익), 손익의 원천지국 구분 등에 관한 명확한 과세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세제 및 세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당국은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상품시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예로서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비과세 논란은 2004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반면 재정부 유권해석은 2005년 3월 말에 내려졌다.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의 성격이 있는 것'을 신설함.

8)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월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4월 한국이 4.65%포인트, 미국이 4.5%포인트 수준임.

해당금융상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8월경까지 은행권의 비과세 선전문구가 그대로 시장참여자에게는 통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상품 개발시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재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국세청은 남용적 조세거래(Abusive Tax Shelters and Transactions) 유형들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 (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article/)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미국세청고시(notice)로 게재된 사례들의 경우 사실관계(facts), 분석(analysis)으로 구성하여 과세당국인 미국세청과 미재무부가 파악하고 검토·확인한 거래들과 유사하다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판단할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있다.⁹⁾

9) 미국세청(IRS) 웹사이트 내 기업고객들에 대해 ‘남용적 조세회피 거래들 (Abusive Tax Shelter Transactions)’에 대한 디렉터리를 운영하고 있음.

IV.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조세정책적 대응

1.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미국의 세제대응

가. 일반규정

<표 3>은 미국의 일반적인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식시기, 소득의 성격구분,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는 과세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먼저 정형화되어 규제되어 있는 시장 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미국세법 제1256조(IRC § 1256)하에서의 시가기준(mark-to-market) 평가규정에 따라 소득의 인식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우선적용을 받는 대상으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장내선물(regulated futures), 외환계약, 비주식옵션, 딜러주식옵션 등이다. 사업연도 말에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로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인식하며 Straddle 규정의 손실이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981년 Straddle 거래를 이용한 조세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화되었으며, 헤징거래와 § 988조 헤징거래의 부분으로 행사된 § 1256 계약(mixed straddle), 딜러시가지주의를 적용받는 증권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인식된 손익은 헤지거래 같이 특별히 통상의 영업손익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대부분 자본손익으로 인정되어 40%는 단기, 60%는 장기 자본손익이라는 자동적 구분에 따라 장기에 대해 우대하는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표 3>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구분	장외		장내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
	선도 (forward)	옵션 (option)	선물(future)과 옵션(option)	
소득의 인식 시기	결제일 (settlement date)까지 이연	결제일 (settlement date) 또는 만기 (expiration)까 지 이연	납세자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거래소의 평가규정 에 따른 시가주의 (mark-to-market)	- 선불액 또는 비정기적 지불액은 계약기간 동 안 상각 - 정기적 지불액은 사업연 도별 발생주의에 근거 - 모든 지불액은 순액 (netted)으로 처리
소득의 성격	계약 또는 관련된 상품에 따라 결정 (통상·자본손익)	규정들 또는 미국세법 제1234A조에 따라 결정 (통상·자본손익)	60%는 장기자본손 익, 40%는 단기자 본손익	- 종료 지불액은 Straddle 거래규정하에 서 적극적으로 거래되 는 형태의 계약인지 여 부에 따라 결정

둘째,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포워드 및 옵션거래들은 외국통화와 관련된 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결제일 또는 만기일까지 손익의 인식시기를 이연시키면서 손익의 성격도 계약이나 상품의 성격 또는 규정들에 따라 통상손익이 되기도 하고 자본손익이 되기도 한다. 외국통화와 관련된 거래들은 많은 경우 미국세법 제988조에서 다루어지고 그 외에는 귀속시기와 성격에 대해 미국세법 제1234조 등이 적용된다.

나. 특별규정

위에서 언급한 파생금융상품의 일반적 조세규정이 소득이나 손익의 성격·귀속시기에 관해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그 예외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미국국세청은 사업목적이 미비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거래라고 판단하면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성격을 납세자와 달리 해석하여 과세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일종의 조세남용적 성격의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미국의 세제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연방세법상 특별규정들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전환거래(Conversion, IRC § 1258)

한 마디로 미국세법 제1258조는 (순)투자액을 산정한 후에 적용가능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의 120%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이득과 통상소득으로 재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3년 미국세법은 연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해 통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31%에서 39.6%로 높이면서 (순)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개정을 하였다. 동일한 수익과 위험을 갖는 금융거래를 하면서도 통상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과세처리될 수 있는 세제혜택을 보기 위한 유인이 발생한 셈이고, 저세율이 적용되는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세법 제1258조 전환거래 규정을 입법화하게 된다. 통상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쇄되는 포지션들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적용이자율 120%의 복리 이자로 발생하였을 범위까지는 통상소득으로 취급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1994년 1월 1일 100달러에 주식을 구입하고 같은 날 2년 후인 1996년 1월 1일 115달러에 이를 B에게 팔겠다는 (선도)계약을 맺었다. 1996년 1월 1일 A는 계약이행을 위해 115달러를 받고 주식을 B에게 인도한다. A의 15달러의 이득은 과거 같으면 자본이득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법하에서는 5%를 적용이자율이라고 할 때 이의 120%인 6%를 복리이자율로 해서 100달러에 대한 투자금액의 2년간 투자소득인 12.36달러는 총이득 중 통상소득의 성격으로, 그 나머진 2.64달러는 자본이득으로 재구분하여 처리하게 된다. 전환거래로 간주되기 위한 첫째 요건은 예상수익이 '돈의 시간가치

(time value of money)' 즉 이자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으로, 위의 예에서 15달러의 수익은 이자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수익과 위험 측면에서 이자의 본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정가격에 자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자산을 판매하려는 계약 등을 통해 통상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전환거래라고 한다. 따라서, 제II장 3절의 재무적 등가이론에서 설명한 합성무이자사채의 경우 (식 3) $B_K = S - C_K + P_K$ 처럼 주식을 사고 풋옵션을 사면서 동일한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파는 형태의 계약을 맺어 이자성 확정수익을 확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A가 B와 선도계약을 맺지 않고 풋옵션을 구입하고 콜옵션을 판다고 하더라도 전환거래에 해당한다.

일종의 거래통합적 과세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화하여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상쇄되는 포지션들을 과세당국이 확인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 투자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정확히 동등하지 않은 포지션거래들까지도 통합하여 세무처리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새롭고 자의적인 구분을 만들어내며 이들은 실행하기 극히 어렵게 된다. 실제 전환거래 규정이 적용되려면, 추가적인 요건들¹⁰⁾을 만족시켜야 하나 실무 적용상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2) 스트래들 규정(Straddle, IRC § 1092, § 263(g), § 1234A, § 1256)

스트래들 또는 스프레드(spread)라고 불리는 금융거래는 특정 포지션

10) ① 특정가격에 자산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그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② 미국세법 제1092조의 스트래들(Straddle)규정상의 거래에 해당, ③ 대여금 성격의 계약이지만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도록 계약 체결, ④ 미재무부규칙에서 규정한 특정거래 등의 세부요건임.

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포지션을 보유함에 따른 손실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활발히 거래되는) 개인자산과 관련한 상쇄되는 포지션(offsetting position)을 말한다. 전통적인 스트래들 거래의 경우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같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같은 행사가격과 같은 만기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식은 개인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Straddle 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유의 선물 또는 선도계약을 원유를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Long position)와 원유를 인도할 수 있는 권리(Short position)로 구성하거나, 원유 현물을 보유하면서 이를 팔려는 선도계약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활발히 거래되는 자산의 경우 사실상 모든 헤징거래가 스트래들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헤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이익 실현을 연기하거나 통상소득이나 단기자본이익을 세무상 유리한 장기자본이익으로 전환하는 조세회피적 행태를 막기 위해 1981년 입법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말에 스트래들의 두 Legs(포지션 가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것을 종료시켜 단기자본 손실을 인식하여 발생시킨 손실로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는 데 사용하면서, 종료시킨 손실발생 leg 대신 인도일만 다르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적은 위험으로 손실은 조기에 발생시키고 이익은 이연하여 장기자본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쇄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들과 관련하여 미국연방소득세법은 1981년 통상 스트래들(straddles)거래라고 불리는 포지션들에 대해 세무처리시 통합 또는 순계하도록 의무화하는 세법규정 제1092조를 도입하였다. 미국세법 제1092조(a)는 손실이연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같은 조(b)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세법 제1091조 Wash Sale 거래규정과 제1233조 Short sale 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그의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중 개별적으로 포지션들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구성을

할 경우 Straddle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한 포지션에 대한 손실이 타 포지션들에 대한 미실현 이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¹¹⁾ 또한 과세당국이 몇몇 통화헤징거래들은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원의 판결들이 오랫동안 연관거래들의 세무는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한 결과 이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6가지의 경우에 개인자산 관련 포지션들은 두 포지션의 가치가 보통 반대방향으로 변할 때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동일개인자산에 관한 상쇄되는 포지션: 예, 원유 선도거래계약에서 long 포지션과 short 포지션으로 구성된 Straddle 거래
- ② 실질적으로 변화된 자산형태이더라도 동일한 개인자산에 관한 포지션
 - ③ 비슷한 만기조건을 가진 부채증서에 관한 포지션
 - ④ 상쇄되는 포지션으로 팔리거나 상품화된 포지션
 - ⑤ 총 포지션들에 대한 총 마진폭이 개별적으로 분리 보유하고 있을 때의 마진 합계보다 낮은 포지션
 - ⑥ 미재무부가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포지션들이 상쇄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신설권한하의 거래들

요약하면, Straddle 거래를 구성하는 포지션 중 하나를 종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그 포지션과 관련하여 미실현된 이익의 한도 내에서 손실로 인식하고, 상쇄되는 포지션이 미래에 모두 종결될 때까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종의 통합적 과세접근방법(transaction integration approach)의 하나라고 할 수

11) Straddle에 대한 과세방법은 미국세법 제1092조를 기본조문으로 하여 동법 제1234A조, 제1256조, 제263조(g) 등에서 일부를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들은 헤지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이연하거나 통상소득과 자본이득을 세무상 유리한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하는 조세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81년 입법화되었음.

있다.

3) Wash sale 거래(IRC § 1091)

1921년 입법화된 미국세법 제1091조 Wash sale 거래규정은 매우 오랜기간 동안 주식이나 증권 매매거래를 통해 조세남용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Wash sale 거래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물타기’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값이 떨어졌을 때 추가로 사게 되면서 주식을 먼저 팔아 발생하는 손실을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새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이연되도록 하며, 새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옛 주식의 발생손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인 요건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및 증권 처분 손실시 처분일 전후 30일 이내 기간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취득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계약(옵션 포함)을 맺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Wash sale 거래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면 손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기 때문에 실무적용상으로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분을 판매했을 때 선의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발생손실에 대한 손금부인을 할 수 없는 반면,¹²⁾ 주식을 시점상 나누어 취득한 후 그 일부분을 매각한 경우 동 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개인 주식 증권 투자자가 아니라 딜러의 경우에는 일상적 상거래 과정에서 손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 딜러 시가주의 규정이나 시가기준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2) 미국세청 예규 제25-602호.

4) 증권대차거래(Short sale IRC § 1233)

주식이나 증권을 빌려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공매도(short sale)’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Wash sale 거래의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Short-sale-against-the-box’ 거래란 빌린 주식 및 증권과 동일한 자산을 실제로 보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매도는 아니고 대차거래에 해당한다. 주식이나 증권의 가격하락이 일반적으로 예상될 때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실제 떨어졌을 때 사서 대여자에게 갚는 ‘공매도’ 또는 ‘증권대차거래’는 조세문제를 떠나서도 투기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가격이 상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지 않아서 브로커에게 주식을 빌려 판매 대금을 예치한 후 추후 사업연도의 short sale 계약시점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함으로써 거래를 종료하는, 즉 손익인식 이연 을 통한 조세회피성 동기에서 출발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정상의 자산에는 주식과 증권, 상품선물, 선도계약, 풋옵션 취득 등이 포함되나, 상품선물로 시가기준평가규정을 적용받거나 헤징거래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되고, 보유중인 실물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에 대해서도 비적용된다.

동일자산을 상환하는 계약종료일까지 손익인식을 지연하고 자본자산의 거래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제정으로 여전히 손익인식을 이연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단기자본이득의 장기자본이득으로의 손익특성 조작은 봉쇄되게 되었고, 판매자의 의도가 규정 적용시 중요하다. 그러나 후술하는 Constructive sale 규정 및 IRC § 1233(h)의 신설로 손익을 이연시키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5) 의제매각규정(Constructive Sale IRC § 1259)

앞에서 설명한 ‘Short-sale-against-the-box’ 형태의 증권대차거래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을 한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손익을 효과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으나, 계약종료일까지 손익의 인식을 이연시킬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조세남용행위가 발생하고 short sale 규정이 경제적 논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따라 비교적 최근인 1997년에 Tax Relief Act에서 미국세법 제1259조로 새로이 입법화된 규정이며 지속적으로 개정이 진행 중이다.

동 규정은 ‘평가이익이 있는 재무적 포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에 대해서는 의제매각(constructive sale)이 있던 것으로 간주되는 날 시점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팔린 후 다시 구입한 것으로 세무처리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중에 그 포지션으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손익금액은 의제매각거래시 인식하였던 손익을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납세자가 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대여받아 판매하는 형태의 short sale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는 먼저 short sale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반환해야 할 자산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초자산 취득당시 short sale 포지션에서 평가이익이 발생된 경우이다. 예외적으로 § 475 및 § 1256 등에 따라 시가기준(m-to-m) 평가되는 position이나 확정수의 부채증서 관련 position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전술한 short sale against the box, 선도증권거래, 증권스왑 등이 포함되고, 상품선물, 이자율선물, 주가지수선물계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나 해석여부에 따라 그 외의 포지션은 적용여부가 모호하므로 대상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 세무목적상 헤징거래(Business Hedging, IRC § 1221)

일반적으로 가격·이자율·환율변동에 기인하여 자산이나 부채 또는 소득흐름에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세무적 동기를 떠나 이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헤징거래를 한다. 재고자산의 매입과 판매활동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자본사용에 대한 원가인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손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다. 선물·옵션·선도계약과 수많은 ‘명목적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들이 위험회피를 위한 헤징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헤징거래와 관련하여 어려운 세무문제는 특정 거래가 세무목적상 헤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손익의 귀속시기 및 성격에 관한 것이다. 헤징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혼선을 가중시키자 미국세법은 그 중 사업헤징규정을 포함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였다. 사업헤징규정이 입법화되기 전에 납세자들은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비용은 일상비용으로 구분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1994년 사업헤징규정을 마련하여, 일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체결되는 헤징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자산으로부터의 이득이 아닌 통산손익으로 간주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7) 딜러 시가기준평가규정(Dealer M-to-M, IRC § 475)

증권딜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금융자산을 매 사업연도 말 시점 기준으로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993년 동 규정 제정 이전에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원가법·저가법·공정시가법 중 택일하여 평가할 수 있었고 증권판매시 손익인식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개정되었다.

8) 외환거래규정(Foreign Currency IRC § 988)

제Ⅲ장 제4절의 ‘미국의 외화표시 금융상품 과세현황’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조세남용적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미국연방소득세법상의 대응은 특별규정의 제정 및 보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지만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차등소득과세 함으로써 조세차익(tax arbitrage)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가주의(mark-to-market)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금융상품의 조합으로 구성된 거래들을 통합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셋째, 금융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경제적 요소들에 기초하여 분해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 OECD와 주요 외국의 과세방법론들

먼저 금융시장 전반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자.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보통신기술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화와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급격히 진전되면서 금융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이 조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방향으로 적절한 과세규칙을 마련해야 건전한 금융시장발전과 조세재정차익거래(tax arbitrage)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당국이 직면하는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세제 및 세

정적 과세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조세회피나 탈세문제를 다룰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통합화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규칙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국가별 차등과세의 틈새시장을 활용하여 세원의 이동성이 높아지며, 역외 조세회피지역 내 금융시장으로 거래활동이 이전되고 있으며,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OECD는 금융상품 및 거래시장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1993년 CFA와 CFM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과세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4년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1995년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 and the Tax Treatment of Income and Capita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OECD Model Tax Convention에 대한 주해설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1994년 Special Session on 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SSIFT)에서 전문가그룹이 CFA에 신종 금융상품 및 이들을 공급·판매하는 은행이나 중개기관 등 금융상품 공급자들에 대한 시장동향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6년 말 이후 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 Tax Policy Implication과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표 4> 내지 <표 7>은 OECD 재정위원회가 1994년 완성한 보고서¹³⁾에서 정리된 회원국에서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현황을 재정리한 것이다.

이자율스왑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자율스왑만에 대한 특별규정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입법화를 계획하고 있지도 않

13) OECD,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DAFFE/CFA, Dec. 1993.

다. 세법 내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과세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사용한 회계처리기준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영미국가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북구 국가 등 몇몇 나라의 경우 양자 중 선택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내 간 거래의 경우 현금결제 기준으로 과세시점이 결정되고 지급액은 통상소득 및 비용으로 소득의 성격이 결정된다. 이자 지급자와 수취자에 대해 차등과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나라들도 많이 발견된다.

이자율스왑거래를 알선하고 수취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이를 지불한 측에서는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기간 도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비용을 수취한 쪽은 과세되고 지불한 쪽은 비용공제된다. 국제간 거래의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면서 지급액의 성격을 사업소득(이윤) 또는 이자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보통이나 오스트리아·캐나다·그리스·영국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표 5>는 금융선물에 대한 회원국의 과세현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영국·미국을 제외하고는 금융선물만을 위한 특별세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세법상의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거나 아니면 납세자의 회계기준에 따른 과세도 허용하는 상황이다. 과세목적상 금융선물거래로부터의 손실이나 이득이 인식되며 통상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처리된다. 영국·미국·캐나다·아일랜드에서의 일부제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융선물거래로부터의 손실도 타 소득에 대해 완전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시가기준(mark-to-market)으로 이득과 손실을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간 거래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선물거래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으로 또는 사업소득 및 자본손익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표 6>은 주식콜옵션에 대한 각국의 과세규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식옵션 관련 특별세법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아닌 나라들로 나뉘는 상황이다. 옵션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거래종사자가 아닌 경우 발행자들이 수취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발행시점, 옵션행사시점, 또는 옵션만기 시점에서 과세되는데 나라별로 과세시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옵션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취득시점, 처분시점, 행사시점, 만료시점별로 손실 및 이득에 대한 비용공제 및 과세가 달라진다. 국제간 거래의 경우 내국인 간 거래와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타 과생금융상품과 달리 기초상품인 주식과 유사하게 보아 조세조약 적용시 콜옵션 관련 지급액을 배당으로 성격규명하는 나라들도 일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표 7>은 발행시점에서 대폭 할인한 형태의 발행할인채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발행할인채만에 적용되는 특별세법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구분되는 상황이다. 영국과 미국 등은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데, 특별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할인액(deep discounts)에 대한 정의가 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발행할인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나라가 대부분이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나라도 일부 존재한다.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대체로 복리방식을 채택하고 과세시점은 현금결제기준 또는 발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발행할인액의 외환손익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발행할인채의 발행자들은 할인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체로 발생주의 기준으로 처리하나 일부 국가의 경우 상환시점에서 허용된다. 국제간 거래의 경우 비거주자가 발행할인채를 소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발견되며, 조세조약 적용시 이자소득으로 또는 이자 및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

IV.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조세정책적 대응 63

<표 4> 이자율 스왑

국 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일반원칙>												
1. a) 특별세법규정 존재여부	N	N		N	N	N	N	N	N		N	N
b) 향후 입법계획	N	N		N	N	N	N	N	N		N	N
2.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Y		Y	Y	Y	Y	Y	Y		Y	Y
b) 회계처리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N	N		N	N	Y	N	N	-		Y	Y
<국내과세>												
5. a) 현금결제 과세	Y	Y		Y	Y	Y	Y	Y	Y		Y	Y
b) 거래성격별 과세	Y	N		N	N	N	N	-	-		Y	N
6. a) 과세시 지급액 처리방법 ⁹⁾	1	1		1	1	1	1	1	1		1	1
7. a) 일회 단일이자 지급 경우의 발생주의 과세처리	Y	Y+N		-	N	Y	?	Y	N		Y	N
b) 부정기적 이자지급 경우의 발생주의 과세처리	Y	Y		-	N	Y	Y+N	Y	N		Y	N
c) 이자지급 및 수취에 대한 차등과세	Y	Y		-	N	N	N	N	-		N	?
8. a) 수수료 비용공제 여부	Y	Y		Y	Y	Y	-	Y	Y		Y	Y
b) 수취수수료 과세 여부	Y	Y		Y	Y	Y	-	Y	Y		Y	Y
c) 수수료에 대한 차등과세 가능성	Y	Y		Y	N	N	-	N	-		Y	N
9. a) 조기해지비용의 소득공제 가능성	Y	Y		-	Y	Y	-	Y	-		Y	Y
b) 조기해지비용 수취의 소득과세	Y	Y		-	Y	Y	-	Y	-		Y	Y
10. 스왑계약차분시 과세처리 ¹⁰⁾	1+2	2		-	2	2	-	2	-		1+2	2
<국제과세>												
11. a)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Y+N	N		Y+N	N	N	N	N	Y		N	N
b) 총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	-		N	-	-	-	-	Y		-	-
c) 반대급부 초과액에 대한 원천징수	-	-		N	-	-	-	-	-		N	-
d) 지급자 거주 및 사업지 국가에서의 원천소득과세	-	-		Y	Y	-	-	-	Y		Y	-
12. 조세조약 적용시 지급액 구분 ¹¹⁾	1+5	1		1+2	?	1	1+4	1	2		1+4	1

<표 4>의 계속

국 가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	영국	미국
<일반원칙>												
1. a) 특별세법규정 존재여부	N		N	N	N			N	N	N	N	N
b) 향후 입법계획	N		N	N	-			N	N	N	Y	N
2.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Y	Y	Y			Y	Y	Y	Y	Y
b) 회계처리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N		Y	N	Y			Y	Y	Y	N	N
<국내과세>												
5. a) 현금결제 과세	Y		Y	Y	Y			Y	Y		Y	Y
b) 거래성격별 과세	N		N	N	N			N	N		Y	N
6. a) 과세시 지급액 처리방법 ⁹⁾	1		1	1	1			1	1		1	1
7. a) 일회 단일이자 지급 경우의 발생주의 과세처리	N		Y	Y	Y+N			Y	N		Y+N	Y
b) 부정기적 이자지급 경우의 발생주의 과세처리	N		?	Y	Y+N			Y	N		Y+N	Y
c) 이자지급 및 수취에 대한 차등과세	?		Y	N	Y+N			N	Y		Y	N
8. a) 수수료 비용공제 여부	Y		Y	Y	Y			Y	Y		Y+N	Y
b) 수취수수료 과세 여부	Y		Y	Y	Y			Y	Y		Y+N	Y
c) 수수료에 대한 차등과세 가능성	-		Y	N	Y			N	Y		Y+N	N
9. a) 조기해지비용의 소득공제 가능성	Y		Y	-	Y			Y	Y		Y+N	
b) 조기해지비용 수취의 소득과세	Y		Y	-	Y			Y	Y		Y+N	
10. 스왑계약차분시 과세처리 ⁹⁾	2		2	2	2			2	2		1+2	
<국제과세>												
11. a)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N		N	-	N			N	N		Y+N	N
b) 총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		-	-	-			-	-		Y	-
c) 반대급부 초과액에 대한 원천징수	-		-	-	-			-	-		-	-
d) 지급자 거주 및 사업지 국가에서의 원천소득과세	-		-	-	-			-	-		-	N
12. 조세조약 적용시 지급액 구분 ⁹⁾	4		1+4	-	1			1	1		1+4	1+4

주: a) 1=통상소득 및 비용, 2=자본손익으로서의 순계, 3=기타유형
 b) 1=자본손익, 2=통상소득 및 비용, 3=비과세
 c) 1=사업이윤, 2=이자, 3=자본손익, 4=기타소득, 5=기타유형

<표 5> 금융선물

국 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13. a) 선물관련 특별세법규정	N	N		N	Y	N	Y	N	N		N	N
b) 향후 입법계획	N	-		N	N	-	-	-	-		N	N
14.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Y		Y	-	Y	-	Y	Y		Y	Y
b) 회계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N	-		Y	-	Y	-	-	-		Y	Y
<국내과세>												
16. a) 과세목적상 손익인식	Y	Y		Y	Y	Y	Y	Y			Y	Y
b) 과세이득의 성격 1) 통상소득, 2) 자본이득	1+2	1		1+2	1	1+2	1	1			1+2	1
c) 손실공제: 모든 종류 소득에 대한 완전공제	Y+N	Y		Y+N	Y	Y	N	Y			Y+N	Y
17. a) 시가기준으로 이득인식	N	N		Y	Y	N	Y	N			Y	N
b) 시가기준으로 손실인식	N	Y		Y	Y	N	Y	Y			Y	Y
c) 계약 매각, 해지, 종료시 이득인식	Y	Y		Y	N	Y	Y	Y			Y	Y
d) 계약 매각, 해지, 종료시 손실인식	Y	N		Y	N	Y	N	N			Y	N
e) 기타 인식결정 기준	N	N		N	N	N	Y	N			N	N
<국제과세>												
18. a)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의무	N	N		N	N	N	N	N			N	N
19. 조세조약 적용시 지급액 구분 ^㉑	1+3	1		1+2	1+2	3	1+3	1			1+2+3	1

<표 5>의 계속

국 가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	영국	미국
13. a) 선물관련 특별세법규정	N		N	N	N				Y	N	N	Y	Y
b) 향후 입법계획	N		N	-	Y				N	N	-	N	-
14.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Y	Y	Y				-	Y	Y	-	Y
b) 회계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		-	Y	Y				-	Y	-	-	-
<국내과세>													
16. a) 과세목적상 손익인식	Y		Y	Y	Y				Y	Y		Y	Y
b) 과세이득의 성격 1) 통상소득, 2) 자본이득	1		1	1	1				1	1		1+2	1+2
c) 손실공제: 모든 종류 소득에 대한 완전공제	Y		Y	Y	Y				Y	Y		Y+N	Y+N
17. a) 시가기준으로 이득인식	N		N	Y	N				N	N		Y	Y
b) 시가기준으로 손실인식	N		Y	Y	N				N	Y		Y	Y
c) 계약 매각, 해지, 종료시 이득인식	Y		Y	N	Y				Y	Y		Y	Y
d) 계약 매각, 해지, 종료시 손실인식	Y		N	N	Y				Y	N		Y	Y
e) 기타 인식결정 기준	N		N	N	N				N	N		N	Y
<국제과세>													
18. a)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의무	N		N	N	N				N	N		N	N
19. 조세조약 적용시 지급액 구분 ^㉑	1+3		1	-	1+2				1+3	1		1+2+3	1+2

주: d) 1=사업이윤, 2=자본손익, 3=기타소득

<표 5>의 계속

20. 예: 액면가 50만(원)인 국채에 대한 1단위 선물거래가 12월 28일 98.45%의 가격으로 실행됨. 매 1/100% 가격변화는 50(원)에 해당함.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1월 4일 98.3%로 상쇄거래를 함. 동 기간 동안 가격이 변화하여 매수자와 매도자에 대한 세무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과세소득/이득은 양의 값으로, 공제한 지출/손실은 음의 값으로 표시됨).

국 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B=매수자 S=매도자	B	S	B	S	B	S	B	S	B	S	B	S	B	S	B	S
12월 28일: B는 1단위 계약을 S로부터 98.45%로 구입함																
12월 31일: 계약은 98.35%로 종료됨			-500				-500 0	+500 0	-500	+500			-500	+500	-500	
4월 1일: B는 1단위 계약을 98.3%에 S에게 매각함	-750	+750	-250	+750			-250 -750	+250 +750	-250	+250	-750	+750	-250	+250	-250	+750

국 가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B=매수자 S=매도자	B	S	B	S	B	S	B	S	B	S	B	S	B	S	B	S
12월 28일: B는 1단위 계약을 S로부터 98.45%로 구입함																
12월 31일: 계약은 98.35%로 종료됨					-500 0	-500 0	-500						-500		-500	+500
4월 1일: B는 1단위 계약을 98.3%에 S에게 매각함					-250 -750	+250 +750	-250	+750	-750	+750			-250	+750	-250	+250

국 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B=매수자 S=매도자	B	S	B	S	B	S	B	S	B	S	B	S	B	S	B	S
12월 28일: B는 1단위 계약을 S로부터 98.45%로 구입함																
12월 31일: 계약은 98.35%로 종료됨									-500				-500 0	+500 0	-500 0	+500 0
4월 1일: B는 1단위 계약을 98.3%에 S에게 매각함	-750	+750					-750 0	+750	-250	+750			-250 -750	+250 +750	-250 -750	+250 +750

<표 6> 주식구입 옵션

국 가	호주	오스트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반원칙>											
21. a) 주식옵션 관련 세법상 특별규정 여부	Y	N		Y	Y	N	Y	N	N		Y
b) 향후 입법계획	N	-		-	N	N	N	N	N		N
22.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Y		Y	-	Y	N	Y	Y		
b) 회계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N	N		Y	-	Y	N	-	-		
<옵션거래 종사자가 아닌 발행자에 대한 과세>											
24. a) 발행시점에서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Y	Y		Y	Y	Y	N	Y			Y
25. a) 옵션재구입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	-		-	Y	-	Y	-			-
b) 손실공제여부	Y	Y		Y	Y	-	Y	Y			-
c) 상쇄포지션 취득시 이득과세 및 손실공제여부	-	-		-	Y			-			
26. 연말평가액조정의 강제 또는 가능여부	N	N		N	Y	N	Y	N			N
27. a) 옵션행사시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과세	N	N		N	N	N	N	N			N
b) 인도되는 주식가액의 일부분으로 프리미엄 처리	Y	N		Y	N	N	Y	Y			Y
28. 옵션만료시 프리미엄 과세여부	N	N		N	Y	N	Y	N			N
29. 이상(24-28)의 과세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존재	Y	N		Y	N	N	N	N			N
<옵션거래 종사자가 아닌 소유자에 대한 과세>											
30. a) 옵션취득시 프리미엄 공제여부	N	N		N	Y	N	N	N			N
b) 옵션만기까지 발행주의 원칙으로 프리미엄 공제	N	N		N	N	N	N	N			N
31. a) 옵션 처분시 이득에 대한 과세	Y	Y		Y	Y	-	Y	Y			Y
b) 옵션 처분시 손실에 대한 공제	Y	Y		Y	Y	-	Y	Y			Y
32. 상쇄포지션 취득시 이득과세 및 손실공제여부	-	Y		Y	Y	Y	Y	Y			-

IV.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조세정책적 대응 69

<표 6>의 계속

국 가	일본	룩셈부르크	베를린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	영국	미국
<일반원칙>												
21. a) 주식옵션 관련 세법상 특별규정 여부	N			N	Y			Y	N	N	Y	Y
b) 향후 입법계획	N			-	Y			N	N	N	N	N
22.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Y	N			-	Y	Y	-	-
b) 회계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N			-	N			-	Y	?	-	-
<옵션거래 종사자가 아닌 발행자에 대한 과세>												
24. a) 발행시점에서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Y				N			N	Y		Y	N
25. a) 옵션재구입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Y			Y	-		-	Y
b) 손실공제여부	Y				Y			N	Y		Y	Y
c) 상쇄포지션 취득시 이득과세 및 손실공제여부								Y				
26. 연말평가액조정의 강제 또는 가능여부	N				N			N	N		N	N
27. a) 옵션행사시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과세	?				Y			N	N		N	N
b) 인도되는 주가가액의 일부분으로 프리미엄 처리	?				N			Y	N		N+Y	Y
28. 옵션만료시 프리미엄 과세여부	N				Y			Y	N		N	Y
29. 이상(24-28)의 과세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존재	N				N			N	N		N	Y
<옵션거래 종사자가 아닌 소유자에 대한 과세>												
30. a) 옵션취득시 프리미엄 공제여부	N				N			N	N		Y+N	N
b) 옵션만기까지 발행주의 원칙으로 프리미엄 공제	N				N			N	N		Y+N	N
31. a) 옵션 처분시 이득에 대한 과세	Y				Y			Y	Y		Y	Y
b) 옵션 처분시 손실에 대한 공제	Y				Y			Y	Y		Y	Y
32. 상쇄포지션 취득시 이득과세 및 손실공제여부	-				Y			Y	Y		-	-

<표 6> 주식구입 옵션의 계속

국 가	호주	오스트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국내과제>												
33. 연말평가액 조정의 강제 또는 가능여부	N	N		N	Y	N	Y	N			N	
34. a) 옵션행사시 프리미엄 공제	N	N		N	Y	Y	Y	N			N	
b)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용 일부로 프리미엄 처리	Y	Y		Y	N	N	N	Y			Y	
35. 옵션만료시 프리미엄 공제 여부	Y	Y		Y	Y	Y	Y	Y			N	
36. 상기(30-35) 과세원칙에의 중요한 예외	N	N		N	N	N	N	N			N	
<국제조세>												
37. a) 수취한 프리미엄의 국내·외 간 동등처리	Y	Y		Y	Y	Y	Y	Y			Y	
b) 외국에 지불한 프리미엄에 대한 원천과세	N	N		N	N	N	N	N			N	
38. e) 조세조약 적용시 지급액의 소득구분 ^{주)}	-	1		1+2	4	2+4	1+2	1			2	
39. 외국거래관련 문제발생여부	N	N		N	N	-	N	N			N	
국 가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국내과제>												
33. 연말평가액 조정의 강제 또는 가능여부	-				N			N	Y		N	N
34. a) 옵션행사시 프리미엄공제	N				Y			N	Y		N	N
b)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용 일부로 프리미엄 처리	Y				N			Y	Y		N+Y	Y
35. 옵션만료시 프리미엄공제 여부	Y				Y			Y	Y		N+Y	Y
36. 상기(30-35) 과세원칙에의 중요한 예외	N				N			N	N		N	Y
<국제조세>												
37. a) 수취한 프리미엄의 국내·외 간 동등처리	Y				Y			Y	Y		Y	Y
b) 외국에 지불한 프리미엄에 대한 원천과세	?				N			N	N		N	N
38. e) 조세조약 적용시 지급액의 소득구분 ^{주)}	4				1+2			1+2	1		1+2+4	1+2
39. 외국거래관련 문제발생여부	N				N			N	N		N	Y

주: e) 1=사업이윤, 2=자본손익, 3=배당, 4=기타소득

IV.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조세정책적 대응 71

<표 7> 발행할인채

국 가	호주	인도네시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일반원칙>												
41. a) 발행할인채 관련 특별세법 규정 여부	Y	Y		Y	Y	N	Y	N	N		N	
b) 향후 입법계획	-	-		Y	N	N	-	-	N		N	
42.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Y	-		Y	-	Y	N	Y	Y		Y	
b) 회계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Y	-		Y	-	Y	N	N	-		N	
43. 이자소득의 과세우대되는 자본이득으로의 전환	Y	N		Y	Y	Y	N	N	Y		Y	
44. "할인액"개념에 대한 세법상 규정	Y	-		Y	Y	N	Y	N	N		-	
45. 비과세되는 발행할인채 존재	Y	N		N	N	N	Y	N	-		-	
46. 이자지급연기채권과 발행할인채 간 동등과세	Y	Y		N	Y	Y	Y	Y	-		N	
<소유자에 대한 과세>												
47. 발행할인액의 성격 1) 이자, 2) 자본이득, 3) 기타	1	1		1+3	2	1	1	1	1		3	
48. 과세시점 1) 실현시점, 2) 발생시기	1+2	2		1+2	1	2	2	1+2			1	
49. 이자계산 1) 복리, 2) 단순선형이자, 3) 기타	1	1+2		1		1	1	1				
50. 채권매도시 발행이자잔액에 대한 과세 및 공제 여부	Y	Y		Y	Y	N	Y	Y+N				
51. 발행할인액의 외환손익 인식여부	N			Y	Y	Y	N	N				
52.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처리 규정 존재	N	N		N	N	N	N	N			Y	
<발행자에 대한 과세>												
53. 할인액에 대한 이자비용처리	Y	Y		Y+N	N	Y	Y	Y	Y		N	
54. 할인액의 공제시점 1) 채무상환시, 2) 발생시	1+2	2		1	1	2	2	1			-	
55. 이자계산방법 1) 복리, 2) 단순선형이자, 3) 기타	1	1+2		3		1	1+2	1				
56. 내국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의무	N	N		N	N	Y	N	N	?		N	
<국제조세>												
57.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Y	N		Y	N	N	N	N			N	
58. 조세조약 적용시 소득구분 ⁰⁾	1+4	1		1	2	1	1	1			3+4	

<표 7>의 계속

국 가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반원칙>												
41. a) 발행할인채 관련 특별세법 규정 여부	Y		N	N	Y			N	Y	N	Y	Y
b) 향후 입법계획	-		N	N	N			N	N	N	N	
42. a) 일반과세원칙하에서의 과세처리	-		Y	Y				Y	Y	Y		
b) 회계기준하에서의 과세처리	-		Y	Y				Y	Y	Y		
43. 이자소득의 과세우대되는 자본이득으로의 전환	Y		N	N	N			N	Y	N	Y	Y
44. "할인액"개념에 대한 세법상 규정	Y				Y			N	Y		Y	Y
45. 비과세되는 발행할인채 존재	-		N		Y				Y	N	Y	Y
46. 이자지급연기채권과 발행할인채 간 동등과세	Y		Y	Y	Y			Y	Y	Y	N	Y
<소유자에 대한 과세>												
47. 발행할인액의 성격 1) 이자, 2) 자본이득, 3) 기타	3		1	1	1			1+2	1	1	1	1
48. 과세시점 1) 실현시점, 2) 발생시	1		1+2	2	2			1+2	1	1	1	2
49. 이자계산 1) 복리, 2) 단순선형이자, 3) 기타			1	1	1			3	3	2	1	1
50. 채권매도시 발생이자잔액에 대한 과세 및 공제 여부	Y		Y	N	Y			N	N	N	Y	Y
51. 발행할인액의 외환손익 인식여부	Y		Y	Y	Y			Y	Y	Y	Y	Y
52.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처리 규정 존재	N		N	Y	N			N	Y	N	Y	Y
<발행자에 대한 과세>												
53. 할인액에 대한 이자비용처리	N		Y	Y	Y			Y	Y	Y	Y	Y
54. 할인액의 공제시점 1) 채무상환시, 2) 발생시	2		2	2	2			2	2	1	2	2
55. 이자계산방법 1) 복리, 2) 단순선형이자, 3) 기타	?		1	1	1			1	1+2		1	1
56. 내국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의무	N		N	Y	N			N	Y	Y	N	N
<국제조세>												
57.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N		N	Y	N			N	Y	Y	N	Y+N
58. 조세조약 적용시 소득구분 ⁰			1	1	1			1	1	1	1+3	1

주: f) 1=이자, 2=자본손익, 3=사업이익, 4=기타소득

대체로 OECD(1996)¹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론으로서 아래의 다섯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는 납세자가 개인이나 기업의 회계기준을 따르면 될 뿐 별도의 세무회계조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허용하여 납세순응비용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과세목적에는 적절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을 (차등과세되는) 과세목적에 기준으로 구성요소별 자산으로 분해(disaggregation)하여 개별 구성부분별로 그 경제적 실체에 부합되도록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해방법과 이를 세법조문화하는 방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여러 개의 거래활동을 하나로 묶어 통합과세하는 방법(integration approach)이다. 이것은 전체 거래를 하나의 헤지수단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파생상품거래가 세후수익률 측면에서 조세아비트라지(tax arbitrage)기회를 부인하는 의미에서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각 금융상품들을 과세연도 종료시점 기준으로 시가평가(mark-to-market)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하지만 공정한 시장가치가 항상 담보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금융상품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조세차익거래들과의 전쟁에서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을 내세우는 매우 광범위한 조세남용방지조치(anti-abuse measures)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특정한 남용거래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질 경우 채택한다

14) 1996년 말 OECD보고서인 “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Tax Policy Implications”의 Executive Summary 내용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과세당국에 사실관계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할 경우 과세규칙의 불확실성과 규칙들 간 비일관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OECD는 혁신적인 파생금융상품거래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과세당국이 위에서 언급한 과세방법론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해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과세규칙을 만들 때에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과세기반 보호를 위해 ‘형평성’과 ‘중립성’이라는 세제의 궁극적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세무행정적 확실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파생금융상품들의 사용이 확대되어 갈수록 현재의 소득과세 및 국제조세협약들이 그 기초로 삼고 있는 기본원칙 및 분류방식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법도 선물거래·옵션·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명문의 과세규정이 없지만, 권리의무확정의 원칙에 따라 차금결제시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기준에 의거하여 행하는 헤지회계에서 발생하는 선물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일본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결제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명문의 세법규정은 없지만 몇 가지 판결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있다.¹⁵⁾ 또한 일본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법인세의 경우 반대매매는 반대매매일에 손익을 인식하고 차금결제는 차금수수일에 손익을 인식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반대

15) 상품선물의 경우 1982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타소득으로 평가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제기준을 지지하는 판례를 남겼으며, 1992년 국제불복심판소는 스트래들에 의한 경우에도 결제기준을 따르도록 판결하였음.

매매 혹은 차금결제로 인식, 손익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한다. 물론 개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영국은 금융업자 이외에는 결제기준이 적용되지만, 금융업자가 시가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세무목적상 적용을 조건으로 시가기준이 적용된다. 프랑스는 시가기준 적용이 원칙이다. 다만, 선물거래가 별개 시장에서의 거래를 헤지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익의 계상은 결제기준으로 한다. 선물거래가 별개의 선물거래 혹은 별개의 시장에서 행하는 거래와 대응관계에 있는 경우 손실의 계상은 대응되는 거래에서의 관련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위스·호주에서는 이익에 대하여 결제기준을, 손실에 있어서는 시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매우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 자체는 아니지만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로 주식대차거래나 repos 거래가 최근 자주 거론된다. 주식을 사고 팔되 미래 특정시점에 서로 합의된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즉 경제적 실체는 '이자부 대차거래(loan at interest)'인 경우이다. 매개된 주식은 일종의 담보역할을 하므로 신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보다 좋은 대출이자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영국소득세법(ICTA)은 매도가격과 재구입가격 간 차이를 이자지급으로 처리하고, 배당일을 포함하여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 가공의 배당지급으로 과세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복잡한 세법상의 문제점으로 조세회피 및 남용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repo는 주식이나 국채의 원소유주 A가 잠정적 보유자인 B에게 100만파운드를 받고 증권을 매도한 후 특정기일인 90일 후 101만파운드를 주고 해당 증권을 돌려 받는다면 1만파운드는 이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계약기간 도중에, 예를 들어 30일 후쯤 잠정적 보유자인 B가 2만파운드의 배당이나 국채이자를 받아 원소유주에게

지급한다면 이것은 ‘가공의 지급액(manufactured payments)’에 해당된다. 만일 기초자산이 채권이라면 이자수취로, 영국 내 주식이라면 배당으로, 해외주식이라면 해외원천소득 및 해외이자지급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영국세법상의 과세처리방식이다.

다만 트레이더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라면 국내 및 해외주식 모두 수취액은 거래익금(trading income)으로, 지급액은 거래손금(trading deduction)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트레이더인 금융회사 A는 150만 파운드를 차입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450만파운드어치의 영국 내 자회사 주식을 은행으로부터 300만파운드에 시는 형식의 계약을 맺는다. 그 차액인 150만파운드는 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고 회계처리 또한 그렇게 하게 된다. 이때 A는 연간 3%의 고정 배당률로 3년 후 165만파운드의 배당을 지급하는 자회사 B(일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사실상 150만파운드 차입에 대해 15만파운드의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 된다. A는 이 우선주를 장기repo 거래를 통해 45만파운드에 당장 처분하면서 30년 후 285만파운드에 해당 우선주를 재구입한다는 약속을 한다. 결국 원래 차입하고자 했던 150만파운드를 갖게 되고, 3년 후 가공의 지급액 165만파운드를 지급하면서 영국소득세법(ICTA88) 95조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다.

결국 영국국세청 및 재무부는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일종의 가공된 지급액(manufactured)을 통해 부당하게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 비용공제받는 회피행위들에 대해서는 세무목적상 부인하는 규정을 2004년 재정법(Finance Bill 2004)에 도입하였다. 주식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이자나 배당 대신 그 보상으로 ‘주식대차거래’나 repo 계약을 통해 맺은 금융거래들에 대해 영국국세청 세무조사지침서들은 그 구체적인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기업 A가 원래 소유주와 주식대차계약을 맺고 5억파운드 가액의 해외주식을 취득한다. 이들 주식은 배당으로 4억 5천만파운드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당

후엔 5천만파운드에 해당할 것이다. 기업 A는 빌린 주식을 당장의 시가인 5억파운드로 팔고, 주식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배당지급시점에 주식대여자에게 4억 5천만파운드를 ‘가공의 해외배당(manufactured overseas dividend)으로 지급한다. 이 지급 후 기업 A가 다시 이 주식을 5천만파운드에 산다면 4억 5천만파운드의 자본이득이 사실상 발생하는 셈이나 합의된 다른 자본손실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된다. 기업 A는 주식대차계약상의 원소유주에게 재구입한 주식을 돌려주면, 기업 A는 4억 5천만파운드의 자본이득과 동일한 금액의 가공해외배당지급을 통해 영업이익은 차이가 없지만 법인세 세무목적상 4억 5천만파운드를 기업 A의 총이익에 대해 비용공제 신청할 수 있는 이득이 있게 된다. 기업 A가 이러한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4억 5천만파운드의 소득공제를 당장 실현시키면서 4억 5천만파운드의 의미 없는 향후 자본손실 가능성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보인다. 따라서 영국국세청은 ‘가공적 배당지급’ 전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영국국세청 자료실이나 웹사이트(www.hmrc.gov.uk/practioner)에 대표적인 조세회피 거래로 예시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및 분석판단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세제현황과 정책방향

가. 개인소득세제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주요 조세규정들은 주로 법인세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 소득세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를 규정하는 세법인 종합소득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립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분리하여 과

제한다(소득세법 §4 ①). 이 중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문은 과세소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소득의 발생원천(source)에 따른 유형화된 구분인데, 합산되어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유형들 간에도 차등과세하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액산출을 위한 세율 적용 직전의 과세소득을 소득유형별로 계산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되는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즉,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이 달라진다.

포괄적 소득개념의 부분적 도입을 시사하는 규정들이 2002년부터 도입되어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도 열거되어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유사하다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부록 2 참조).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과 제17조의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제1항 각호들의 제일 마지막에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그 이전 각호에 명시된 이자 및 배당소득들에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업어음의 할인액,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의 이자,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과 ‘수익분배의 성격’을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로부터의 소득 중 이자 성격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만일 개인거주자가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을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수취한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자에 대한 안내 및 원천징수와 관련된 시비가 투자자 개인-금융기관-과세당국 3자 간에 발생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 소개한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자가 금융소득 기준금액 미만에서 초과로 신고유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징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를 추징할 수 없을 수 있다.

제Ⅱ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성격(character)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가 금융상품의 경우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차등과세하는 정도가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이 장·단기 자본이득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과세표준 결정과 적용세율에서 차등과세하는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양자를 철저히 분리과세하면서 개인의 상장 또는 등록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파생금융상품의 전제가 되는 기초자산 중 확정적 이자나 기간과세되는 배당에 대해 실현주의 또는 결제기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 장기간의 불확정적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상황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조세회피적 기회가 풍부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고객의 경우 법인과 달리 파생금융상품거래시 따라야 할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법규정의 미비 현황을 보완해 줄 장치에 의존할 수도 없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법인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

제한 과세소득의 계산·귀속시기·자산평가시에 당해사업자가 선택한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조세회피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에 따른 연도말 환손익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비법인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환손익에 대한 일종의 시가평가주의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상황에서 원금보장과 함께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가(지수)연계예금(ELD)’,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및 유사한 파생상품투자신탁 펀드상품들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원금보장형이라는 명칭을 갖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원금보장의 방법이 아니라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위험도가 낮은 국공채를 구입하여 원금보장기능이 있는 확정수익자산으로 구성하면서 나머지를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수익자산으로 메우는 형태이다. 아니면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II장의 설명들과 유사하게, 금융상품의 최종적인 수익률이 개별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의 실적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불확정수익부분과 원금보장 또는 최소한의 확정적 수익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인 것이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을 주 대상으로 펀드형태·채권형태·예금형태로 판매되는데 첫 번째 펀드형태로 판매되는 투자신탁상품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나머지 두 형태는 채권이자형태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주민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 15.4%로 분리과세되면서 기준금액 초과인 경우에 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2장에서 의 <사례 5>에서 제시한 ‘옵션부 부채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자부나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받는 수익분배금은 해약일 환매일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아 저율 또는 분리과세하는 반면, 이익금 산정시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벤처기업주식·선물

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하는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¹⁶⁾ 또한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얻는 손익도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2003년 말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자부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이익도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과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구성되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2005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을 신설하여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투자신탁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과 직접투자 간에 세부담이 차등화될 여지를 줄일 수 있어서 남용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세법개정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자나 배당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로 완납적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된 투신권의 수익증권은 끊임 없이 조세회피적 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고, 이에 대응하여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소득세법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주식은 i)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 ii)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iii)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된 주식 등이다. 따라서 현물 주식시장의 경우 비상장주식,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투자신탁이익 등의 범위에 국외유가증권도 포함시켜 오다가 2005년 2월 제외시켰음.

상장·협회등록주식의 대주주(총발행주식의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및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셈이다. 1998년 이후 과세대상을 넓혀온 것은 사실이나, 상장이나 등록된 법인주식 발행잔액 총량을 기준으로 소액주주 대 대주주 보유비율(예, 15% 대 85%)을 갖고 거래되는 상장 및 등록법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소액주주가 실현하는 양도차익이 적고 대주주가 실현하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액주주 대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대비하여 상당부분 양도차익과세되고 있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현물주식의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금액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비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내거래든 장외거래든 모두 비과세함으로써 주식의 경우 기초자산 대 파생상품 간 불형평성 문제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대해 과세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세 또는 비과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의 엔화스왑예금은 그 한 예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배당 등 전통적인 소득구분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신종 금융상품(Warrant: 신주인수권)들이 조세회피나 남용을 목적으로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작업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수익에 대한 소득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과세로의 조속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법인세제

한편 법인형태의 금융회사들의 경우, <부록 3>에 수록한 법인세 분야 규정들은 일단 법인사업자가 수행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나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예를 들어, 1994년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의 포괄적 규정을 두어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준중원칙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였다. 즉,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내국법인이 지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동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¹⁸⁾』은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는 결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물거래 환차손익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환계약 이외에도 다른 선물거래, 그리고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달리 소득의 구분과 열거주의 방식에 따른 조세의 맹점이 적어 파생상품거래로부터의 소득도 법인세 과세대상이지만 손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납세자가 조세회피적 동기에 의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7) 세법 이외에 (1) 선물거래법, (2) 증권거래법, (3) 외국환거래법, (4) 기업회계기준이 주요 적용법령이고, (5)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할 때의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18)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 17, 법인세 예규 22601-505 등.

V.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제II장에서 현대의 재무이론을 통해 상이한 유형의 자산들은 서로를 이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고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이자채권과 (불확정수익) 주식 그리고 주식옵션을 사고 팔아 구성된 포지션이 위험이나 수익이라는 경제적 실체 측면에서는 동일하면서도 투자자의 개인소득과세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호관계들이 기존의 소득세제도에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시사점은 확정수익자산과 불확정수익자산 간의 근본적 구분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소득세에 대한 도전문제를 다시 요약하면, 재무적 등가관계를 완전하게 계약형태로 실행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하에서 만기 수익률(yield-to-maturity)과세와 추후(wait-and-see)과세 간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적용세율상의 차이는 과세당국의 세수손실이 세수증대와 정확히 상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시키는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은 증대한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세무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납세자가 손익인식시기를 조정하고, 통상소득보다는 자본이득으로, 단기자본이득보다는 장기자본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것이다.

비교적 헤이그-사이몬스 소득개념에 충실하게 자산가치의 변화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연방소득세제를 정비한 미국에서도 차등과세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손익의 성격(character)구분, 손익 인식 시점과 같은 시간적 측면(timing), 그리고 원천(source) 등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확정수익(fixed return)'이나 '불확정수익(contingent return)'이나 간의 구분은 성격과

시간 양 측면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구분은 외견상 보이는 것과는 달리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소득세제를 위협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차등과세의 정도가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에 의해 더욱 증폭되어 납세자는 동일한 위험 및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조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서는 연방세법상의 특별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기존의 과세유형과 부합하도록 통합·분해하는 거래분석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현금지급이나 결제와 같은 실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시가평가 후 가치변동분까지를 소득세 과세대상화하는 세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산물이 연방소득세법상의 조세납용방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조세순응비용을 줄이는 세무안내나 세무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OECD에서의 정책제안이나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발달한 몇몇 나라들에서도 ‘과세나 규제당국 내에 시장동향을 관찰(monitoring)하면서 개별상품의 신개발 및 거래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장전문가들에 의해 세계 및 세정의 빈구멍(loophole)을 메우는’ 사후교정적이면서도 점진적(piecemeal) 방식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나라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이면서도 통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단지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조세회피적 거래사례로 포착되는 시간과 그로부터 세계·세정당국이 납세자에게 비공식적인 안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시간을 줄여 세수일실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을 높이는

19) IFA(1995)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가별 조세정책적 대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기총회 보고서는 ①일관성 ②명확성 ③공정성 ④탄력성의 원칙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음.

등 세정적 노력에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조세남용적 파생 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당국에 더 많은 과세재량권을 인정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연구들은 파생금융상품시장이 갖는 위험 관리적 순기능과 효율성을 중시하여 시장형성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계 및 감독 등 규제 측면에서의 당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보였다. 시가평가기준(mark-to-market)으로의 회계기준 전환, 거래목적별 헤지거래구분에 따른 회계처리, 필요경비 소득공제부인 등을 주장하고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적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완화 추세에 맞추어 파생금융상품 과세문제가 국제적 투자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종합적인 국내조세제도 개편의 모범답안을 내놓기보다는 회계기준에 따르는 과세처리와 유형별(이자율스왑·선물·주식옵션·할인사채) 과세제도 정비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파생금융상품 과세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도 정책시사점으로,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에 대한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의 도입과 함께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시장에 대한 위축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의 기본 틀 내에서 충격완화를 위해 점진적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현행 종합소득세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등 소득유형별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에의 항목추가, 또는 ‘파생금융소득’ 규정의 신설에 의한 접근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달정도 및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오랜 기간 정비되어온 미국이나 영국 등과 비교하여 세제구조적 측면에서 그리고 금융시장적 측면에서 공통점에 기초한 외국경험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한편 차이점에 기초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법들로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관련) 종합소득세법·법인세·국제조세 및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은커녕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채권·외환상품·지수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적 난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상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기초 현물상품에 대한 실현주의 과세 및 분류과세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준과세제도(baseline taxation)를 정비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포괄적 소득의 개념에는 자산의 가치변화에 따른 소비가능능력의 변화도 포함되므로 미실현이득 및 손실도 처분 또는 현금결제의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소득세제가 실현주의 또는 현금결제주의를 채택하여 소득세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의 근본원인이 실현주의 소득세제에 원초적으로 기인하므로 그 해답 또한 궁극적으로는 실현주의를 극복하는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주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해결방법인 전면적인 시가평가주의 실시가 불가능한 데 대한 차선책으로서 점진적(piecemeal) 접근 방법을 채택할 경우 조세회피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 중 개인소득세제인 종합소득세의 정비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와 제17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12가지와 6개의 구체적인 소득과 ‘이자성’ 및 ‘수익배분성’ 유사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성’과 ‘수익분배성’ 유사소득 항목을 신설 규정하여 포괄주의 과세하려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완납적 저율분리과세제도가 존재하고 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구분에 따른 소득세제의 차등과세적 특징은 더욱 강화되

어 조세회피적 상품개발 및 금융거래의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건 분리과세건 과세한다는 기본 정책방향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중 주식이나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현물주식과의 비대칭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미국연방세법이 기본적으로 통상소득(ordinary income), 단기자본이득(short-term capital gains),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s) 간 소득성격을 구분한 후 차등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납세자가 투자목적 주식 및 증권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세납용적 동기의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wash sale, short sale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short sale)는 우리나라의 경우 허용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주식 이외에도 이자율·외환·일반상품·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자산에 기초한 연계성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수익을 이자적 성격이나 수익금의 배분적 성격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여전히 차등과세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수익증권에 대한 간접투자가 아니라 외화자산이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은 여전히 소액주주의 경우 저율과세 정도가 아니라 비과세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유인은 풍부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이 아닌 복합(hybrid)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는 추세이므로 과세당국이 시장상황을 쫓아가면서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지고 과세문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양측에게 조세협력비용을 높이면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엔화스왑예금 사례로부터의 교훈에서 소개하였던 것처럼,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적 거래 및 남용사례(Abusive Tax Shelters and Transactions)를 고시하여 세무행

정적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해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금융회사가 세제혜택을 강조하여 설계되고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수동적으로 구입한 개인납세자에 대해서 만큼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이후 시판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이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를 명확히 하여 상품소개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를 미국연방소득세와 비교할 때 포괄적 소득세제로의 근접정도가 낮은 일종의 혼합형 소득세제(hybrid income taxation system)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세회피적 특별규정의 신설·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적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이전 시점에 과세당국이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선물을 포함하거나 선물거래세를 도입하지는 정책적 주장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이는 선물거래로부터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현물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비대칭적 과세에 기인한 시장의 차익거래 장애와 위축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차익거래파생금융상품 중 일부분인 주가지수선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주식관련 선물에 대해서만 거래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목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인 주식 및 증권에 대해 이미 증권거래세가 존재하고 있고, 도입의 주된 목적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분석적 소득세과세방법(transactional approach)을 택하기 전의 준비작업으로서 매우 낮은 거래세율 부과를 통해 거래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듯이 금융자산의 position에 대한 변동과 거래의 목적분석 등이 필수적이므로,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관련 정보가 비교적 낮은 납세협력비

용으로 과세당국에 축적되어 향후 개인소득세제 보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선물거래소시장과의 경쟁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반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거래세 세율의 수준과 시장대체성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세금이 아닌 수수료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일종의 거래비용에 해당하는데 세수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거래세 도입에 따른 투자자 행태변화 그리고 외국으로의 거래이전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84년 1%의 거래세를 도입한 후 1986년 이를 2%로 인상했는데, 1990년까지 스웨덴 주식거래액의 50%가 런던에서 거래되었고, 스웨덴 이자율옵션시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증권거래자들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대체시장이 존재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증권거래세의 회피를 위해 타국의 해당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5년 미국증권위원회(SEC)는 미국 내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고정거래수수료 부과를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고정수수료 철폐 전 미국 내 거래소들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은 거래비용에 대한 거래량 탄력성이 $-0.25 \sim -1.35$ 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미 낮은 거래비용을 치르며 활발히 거래되던 증권들의 거래에 국한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세율 0.5%에 탄력세율 0.15%(유가증권시장 주식) 및 0.3%(협회중개시장 주권)가 장내 현물 거래에 대해 거래수수료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수준이라면 역내 선물시장 간 경합에 따른 대체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파생금융상품 중 시장규모의 급등세를 보이는 선물시장에 대해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면서 시장동향과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으면서 향후 개인소득세제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소득세제의 틀 내에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은, 『과생상품 등의 회계 및 세무』, 『삼일저널』, 삼일회계법인, 1999. 가을호.
- 김동건·김찬웅·백원선·정영기, 『과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국세청 연구보고서), 2000. 9.
- 이희승, 『과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세무』, 『월간 회계와 조세』, 2000. 10.
- 이창희, 『과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IFA) 조세학술논집 제12집』, 1996. pp. 110~135.
- 이창희, 『2004년 판 세법강의』, 박영사, 2004.
- 정영기·박정우, 『과생상품거래의 과세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학연구』, 제17호, 2001. 2.
- 정영민, 『과생금융상품과 국제거래 조세제도 해설: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사, 2004.
- 최홍식·김성룡, 『과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정책보고서 96-05, 한국조세연구원, 1996. 8.
- 홍범교, 『장외과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정책보고서 97-01, 한국조세연구원, 1997. 4.
- 홍종철, 『과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법무월보』, 국세청, 2000. 2.
- 홍철근, 『과생금융상품거래의 실태 및 과세문제검토』, 『월간조세』, 2000. 6~8월호.
- 한국증권연구원, 『한국과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 전략: 세계적 신조류와 시사점』, 개원 8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원고, 2005. 8. 31.

- Alvin C. Warren, Jr.,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and Income Tax Policy," *Harvard Law Review*, December, 1993.
- _____, "US Income Taxat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899~923.
- David F. Levy, "Towards Equal Tax Treatment of Economically Equivalent Financial Instruments," *Florida Tax Review*, 1997.
- Daniel I. Halperin, "Interest in Disguise: Taxing the "Time Value of Money,"" *Yale Law Journal*, January, 1986.
-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Tax Aspects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80b, 1995.
- Jeff Strnad, "Taxing New Financial Products : A Conceptual Framework," *Stanford Law Review*, February, 1994.
- Graetz, J. Michael and Deborah H. Schenk, *Federal Income Taxation: P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Foundation Press, 1999.
- McDonald, R. L. "The Tax (Dis)Advantage of a Firm Issuing Options on Its Own Stock," *Journal of Public Finance* 88 (2004) 925-955.
- OECD, "OECD Background Documentation on Financial Innovation",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 Paris, 1998. 11.
- OECD, "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Tax Policy Implications (A Report by the SSIFT)," Dec. 1996.
- OECD,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DAFFE/CFA(94) 12, DEC, 1993.
- Reuven S. Avi-Yonah, "U.S. International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Jan. 2001 Draft.
- Schwert W. G. and Paul J. Seguin,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 Overview of Costs, Benefits and Unresolved Questions,”

Financial Analysts Journal, Sep.-Oct. 1993 p. 3.

Shuldiner, “Journal a Approach to the Taxation of Financial

Introduction”, *Tax Review*, Vol.71 No 2, Dec. 1992. pp. 243~350.

www.hmrc.gov.uk/practioner

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article/

<부록 1: 시장규모>

<부표 1> 거래소별 단기이자율선물시장 비교

	거래량(계약수)		거래금액(백만달러)		거래량 순위 (2004기준)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AMERICAS					
BM&F	134,385,483	81,468,905	NA	NA	4
Bourse de Montreal	7,984,609	6,584,506	6,000,514	4,756,532	8
Chicago Board of Trade (CBOT)	11,940,120	8,271,726	59,700,600	41,358,630	6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300,849,399	210,188,753	306,534,090	212,388,379	1
MexDer	202,074,714	173,475,856	1,777,405	1,588,297	3
EUROPE, AFRICA, MIDDLE EAST					
Budapest SE	3,445	100	4	-	15
Eurex	585,142	504,617	713,792	560,552	11
Euronext	221,070,137	185,083,136	254,172,899	195,320,605	2
OMX Stockholm SE	4,489,482	4,890,858	607,629	611,163	10
ASIA, PACIFIC					
Bursa Malaysia Derivatives	141,969	119,659	37,360	31,489	13
Hong Kong Exchanges	59,040	48,109	9,440	7,621	14
SFE Corp.	15,364,820	11,972,875	12,332,279	7,849,007	5
Korea Exchange	2,621	NA	481	NA	16
Singapore Exchange	10,808,968	20,986,197	10,365,798	20,275,413	7
TAIFEX	209,561	-	51,301	-	12
TIFFE	7,262,779	4,158,800	6,748,333	3,589,452	9
Total	917,229,668	707,754,097	-	-	

주 : NA : not available

순위는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 2004년 annual statistics 상의 통계표 내에서의 순위임.

자료 :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 ANNUAL REPORT AND STATISTICS 2004.

<부표 2> 거래소별 장기이자율선물시장 비교

	거래량(계약수)		거래금액(백만달러)		거래량 순위 (2004기준)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AMERICAS					
Bourse de Montreal	3,005,359	2,397,119	231,591	172,529	7
Chicago Board of Trade (CBOT)	385,179,108	289,781,060	39,455,321	29,400,266	2
MexDer	293,884	42,962	2,444	411	11
EUROPE, AFRICA, MIDDLE EAST					
BME Spanish Exchanges	95	1,382	12	157	17
Eurex	522,190,193	512,156,750	72,857,683	65,139,176	1
Euronext	15,929,862	12,878,688	2,874,833	2,010,380	4
JSE South Africa	14,186	10,874	2,363	1,692	15
OMX Stockholm SE	2,056,553	1,783,550	278,344	222,872	8
RTS SE	19,318	-	NA	-	14
ASIA, PACIFIC					
Bursa Malaysia Derivatives	23,821	119,427	627	3,143	13
Hong Kong Exchanges	2,225	2,012	317	284	16
Korea Exchange	7,322,841	10,456,580	711,575	958,757	6
SFE Corp.	31,375,504	25,955,275	23,174,166	17,015,389	3
Singapore Exchange	931,642	759,781	87,262	69,236	9
TAIFEX	67,705	-	11,546	-	12
TIFFE	392,531	613,117	36,473	52,918	10
Tokyo SE	8,025,268	6,465,073	7,456,813	5,579,991	5
TOTAL	976,830,095	863,423,650	-	-	

주 : NA : not available

순위는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 2004년 annual statistics 상의 통계표 내에서의 순위임.

자료 :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 ANNUAL REPORT AND STATISTICS 2004.

<부표 3> 거래소별 통화선물시장 비교

	거래량(계약수)		거래금액(백만달러)		거래량 순위 (2004기준)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AMERICAS					
BM&F	24,741,990.0	18,467,880.0	NA	807,453.0	2
Buenos Aires SE	31,372.0	182,468.0	31.0	180.0	10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48,772,627.0	31,873,838.0	5,849,779.0	3,422,003.0	1
MexDer	1,400,448.0	81,395.0	19,772.0	816.0	6
New York Board of Trade (NYBOT)	2,362,615.0	1,775,934.0	324,013.0	249,598.0	4
EUROPE, AFRICA, MIDDLE EAST					
Athens Derivatives Exchange	82,169.0	74,221.0	6,394.0	5,271.0	8
Budapest SE	2,965,818.0	1,627,757.0	3,966.0	1,798.0	3
Euronext	3,985.0	2,493.0	90.0	53.0	11
RTS SE	100,087.0	24,514.0	100.0	25.0	7
Warsaw SE	3,455.0	6,145.0	52.0	67.0	12
ASIA, PACIFIC					
Korea Exchange	2,081,889.0	1,506,123.0	104,633.0	75,430.0	5
SFE Corp.	41,862.0	25,566.0	3,092.0	NA	9
TIFFE	200.0	0.0	2.0	0.0	13
TOTAL	82,588,517.0	55,648,334.0	-	-	

주 : NA : not available

순위는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 2004년 annual statistics 상의 통계표 내에서의 순위임.

자료 :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 ANNUAL REPORT AND STATISTICS 2004.

<부록 2: 엔화스왑예금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005. 3. 30>

분류/일자 재소득-114, 2005. 3. 30

제목 :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5.2.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

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4.12.31>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 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1999.12.28>
-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소득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 제97조>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개정 1996.12.30, 1998.12.28>
-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5.2.19>

-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삭제 <1998.12.31>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삭제 <1998.12.31>

<소득세법 제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과생금융상품형 투자신탁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제5호·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삭제 <2005.2.19>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⑥ 투자신탁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 ⑦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한다. <신설 2005.2.19>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로만 이루어진 경우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12.30]

<부록 3 : 법인세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20조>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

20)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수의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회계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으로 구성된 기업회계기준으로 대표됨.

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

2-11-14···17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1988.3.1 신설)

<법인세법 예규 22601-505, 1988.12.3>

【분류/일자】 국일22601-505, 1988.12.3

【제목】 통화 Swap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채권·채무가 결제된 날임.

【요약】 통화 Swap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채권·채무가 결제된 날임.

【질의】 당 지점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인 갑류 외국환은행으로서 외환관리규정 제2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대미달러 대일본엔화 간 장기통화 Swap거래를 맺고 이에 대한 환율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 거래와 반대되는 거래를 본점과 동시에 체결하고 있음.

1. 장기통화 Swap거래의 내용 및 조건

US\$ 변동금리이자(매 6개월)	US\$ 변동금리이자 (매 6개월)
국내 <----->	체이스 <----->
법인 ¥ 고정금리이자(매 6개월)	서울 ¥ 고정금리이자 (매 6개월)
<----->	지점 <----->
US\$ 계약원금 (만 기)	US\$ 계약원금 (만 기)
<----->	<----->
¥ 계약원금 (만 기)	¥ 계약원금 (만 기)
<----->	<----->
(1) 엔 계약원금 : 10,000,000,000(¥)	(5) 계약만기일 : 1996.5.20
(2) 계약환율 : 166.7(¥)/US\$	(6) ¥화 지급이자율 : 연리6
(3) US\$계약원금 : US\$59,988,002	(7) US\$화 지급이자율 : 연리 LIBOR-0.2
(4) 계약개시일 : 1986.6.26	(8) 이자지급주기 : 매 6개월

위 도표에서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국내법인은 US\$계약원금 (US\$59,988,002)을 만기에 체이스 서울지점에 지급하고 계약기간 동안 동 계약원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매 6개월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반면 체이스 서울지점은 동 내국법인에게 ¥계약원금(¥10,000,000,000)을 만기에 지급하고 계약기간 동안 약정이자를 매 6개월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동 내국법인은 계약원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US\$채무로 교환한 결과가 됨. 동 통화Swap 거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만기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종료일 현재 시장 환율과 Swap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금을 수수하게 되었음. 또한 만기 전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원하는 경우 동 시점의 시장 환율과 Swap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금을 지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대상 사안

위와 같은 장기통화 Swap계약하에서 국내법인이 1988년 6월 30일자로 만기 전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당 지점은 계약종료일 현재 대미

엔화환율(¥130/US\$1)과 계약환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10,000,000,000/130 - ¥10,000,000,000/166.70·US\$16,935,075)을 시장금리로 계약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할인한 현재 가치금액(US\$16,935,075/(1+0.09)^{2.4}=US \$8,499,143, 시장금리 연 9, 할인기간 8년)을 지불하여야 함. 이와 더불어 당 지점은 계약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된 ¥계약원금에 대응하는 US \$금액에 대한 금리차(계약 US\$변동금리 LIBOR - 0.2와 만기 전 계약종료일 현재 금리 LIBOR·0.5와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US\$ 76,923,077×0.7×8년=US\$4,307,692)의 현재가치(US\$ 2,980,287)도 지급하여야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일방인 국내법인이 만기 전 계약종료를 원하고 당 지점은 c본점과의 역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종료일에 US\$11,479,430(계약원금에 대한 환율차이 상당금액의 현재가치 US\$8,499,143와 이자율 차액의 현재가치 US\$ 2,980,287)을 동 국내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동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또한 동 국내법인과 만기 전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 당 지점이 받게 될 지급금(당초 계약환율과 재계약 당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도 아울러 질의함.

3. 질의 내용

위 질의대상 사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만기 전 계약종료시 당 지점이 지급하는 지급금과 당초 계약의 만기 이전 재계약으로 인해 당 지점이 수령하게 될 지급금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지급 또는 수령시 전액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이유) 법률상 권리의무 관점에서 볼 때, 계약의 종료 또는 별개 신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외환거래손익에 해당하므로 지급 또는 수령시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당초 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이유) 비록 당초 계약의 종료로 인한 지급금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약과 대응되는 역거래가 계속되고 따라서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 볼 때

동 지급금은 지급시 손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본점과의 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기간배분되어야 함. 재계약시 수령하는 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장래 본점과의 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배분하여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병설> 계약종료시 지급하는 지급금은 전액 지급시 손금으로 인식하고 재계약시 수령하는 지급금은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이유) 만기 전 계약종료시 지급하는 지급금은 법률상 기종료된 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권리의무확정의 원칙에 비추어 지급시 전액 손금인식하여야 하고, 재계약시 수령하는 지급금은 향후 당초 계약의 잔여만기 동안 존속하는 별개의 신규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동 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회신】 은행의 한국지점이 국내법인과 장기통화 Swap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 거래와 반대되는 거래를 본점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동 국내법인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만기일 전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당초 계약을 해지한 후 재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당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계약 당사자간 외화채권채무가 실제로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 예규 22601-3776, 1988.12.23>

【분류/일자】 법인22601-3776, 1988.12.23

【제목】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귀속함.

【요약】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귀속함.

【질의】 외국환은행과 법인 간에 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서상 매매하기로 한 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연장된 매매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소득임. (이유)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에 따르면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조건변경에 불과하며 따라서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실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소득임. (이유)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채권채무가 확정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임.

【회신】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예규 22631-39, 1992.2.10>

【분류/일자】 법인22631-39, 1992.2.10

【제목】 선물환거래계약만료일에 기한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는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요약】 선물환거래계약만료일에 기한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한 경

우 당해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는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의】 금융기관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계약 만기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일의 만료일인지 아니면 연장계약의 만료일인지 여부

【회신】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국문요약>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노영훈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엔화예금으로부터의 수익 중 이자와 환손익에 대한 구분과 과세문제가 금융권과 과세당국, 그리고 개인투자자 간에 이견을 보이게 된다. 과세당국의 최종적 결정은 수익 전체를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 성격인 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조세정책당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생금융상품이 개인소득세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생금융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차등과세제도 및 현금결제주의 원칙이 어떠한 이유로 조세회피용 파생금융상품개발을 유발하는지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살피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개인소득세제를 조세개혁 차원에서 개편할 때까지 일종의 잠정적 완화책으로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고, 국세청이 조세회피용이라고 판단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개발 및 시판 초기에 국민에게 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Policy Response to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rough DFI in Korea

RO, Younghoon

In 2005, Korean National Tax Service decided to tax the return on the Japanese currency savings account combined with forward exchange contract. It is the first ruling that the fully hedged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savings account income as a whole can be treated as interest and subject to withholding tax. The decision was made just one month ago even if the product have been sold by the commercial banks more than 3 years ago with the advertisement that the foreign exchange gain guaranteed by the forward contract are tax-exemp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 to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in Korean setting. Also, it recommends some interim measures like introduction of transfer tax on regulated financial futures and taxing authorities' publishing tax-avoidance scheme notices to public, before the full-scale tax reform on income tax system incorporating mark-to-market valuation and accrual based tax accounting.

<著者略歴>

魯英勳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Harvard 법대 초빙연구위원(visiting scholar)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政策報告書 05-03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2005년 12월 22일 인쇄
2005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노영훈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5

ISBN 89-8191-304-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